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몽골

2020. 12.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CONTENTS

1 국가 현황

가. 국가개황	03
나. 한국과의 관계	04
다. 주요 경제지표·동향·전망	05

2 산업안전보건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 개요	11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11
다. 산업재해 현황	15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 등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25
나. 안전인증·검사 제도	27
다. 위험성평가 제도	28
라. 근로조건 관련제도	29
마. 사회보험 제도	31
바. 벌금 제도	33

4 노동시장 및 경제전망

가. 노동시장	37
나. 경제 전망	39



- [첨부]** 【첨부 1】몽골 산업안전보건법(2008, 국문) 전문
 【첨부 2】몽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2015년)
 【첨부 3】산업 재해,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
 【첨부 4】정부 감독 및 감사에 관한 법 전문



01

국가현황

가. 국가개황	01
나. 한국과의 관계	02
다. 주요 경제지표·동향·전망	03

1 국가현황

가 국가개황

국 명	몽골(Mongolia)
면 적	1,564,116km ² (자료원 : 몽골 통계청, 2020년 6월 기준)
수 도	울란바토르(Ulaanbaatar)
인 구	3,326,348명 (자료원 : 몽골 통계청, 2020년 6월 기준)
민족(인종)	할흐민족(90%), 카자흐족(5.9%), 브라이드계(2%) 등
언 어	몽골어
종 교	라마불교
기 후	건성냉대기후, 겨울은 춥고 길며, 여름은 짧음,
화 폐	투그릭
몽골국기	 1924년 제1회 대인민회의에서 제정된 몽골국가는 빨강·파랑·빨강의 세로형 3색기로 빨강은 환희와 승리, 파랑은 충성과 헌신을 나타낸다. 왼쪽의 무늬는 소용보(煙臺)로서 자유와 독립을 상징하며 제일위의 불꽃은 민족의 성·재생·향상·번영·종족·번성 그 밑의 태양과 달은 몽골민족, 끝부분의 창과 화살은 적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며 아래의 2개 직사각형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성실과 봉사, 물고기는 경각심, 2마리 물고기는 남자와 여자 양쪽에 수직으로 위치한 2개의 직사각형은 요새와 성벽을 의미한다.
국가원수	○ 대통령: 할트마깅 바툴가(Khaltmaa Battulga) ○ 국무총리: 오희나깅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 ○ 국회의장: 검버자브 잔당샤타르(Gombojav Zandanshatar)

출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http://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nationMain.do?natnSn=65>)



나) 한국과의 관계

정 치

- 한국과 몽골은 1990년 3월 26일 수교하였으며, 2011년 이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 2011년 양국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선린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몽골은 한국을 자국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고 있으며 한국과의 협력관계 확대를 중요한 외교목표로 설정하는 등 적극적인 한국 접근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현직 대통령 외의 전 대통령들이 모두 한국 방문했으며, 2016년도에 당시 몽골 대통령 Z. Elbegdorj, 한국 대통령 박근혜가 양국을 방문했다. 2020년은 한-몽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양국 간 주요 인사들의 활발한 교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입국제한 조치 등으로 화상으로 업무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 제

- 한국은 몽골의 제4위의 수입대상국이며, 2019년 기준 총수출의 0.36%, 총수입의 4.35%를 차지하고 있다.
- 1990년 수교 당시 교역액은 270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0년부터 2억 달러를 초과해 2019년에는 3억 2367만 달러로 집계되어 양국 상호보완성과 성장잠재력을 감안하면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20년 2월까지 양국 교역이 증가세를 보였으나 3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여파로 국경봉쇄 및 수요 하락 등에 따른 결과이다. 2020년 5월 기준 대 한국 수입액은 1억298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8% 하락했다. '20.5월 기준 상위 10개 수입 품목별로 보면 담배와 화장품 수입이 증가세를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세이다.
- 양국 간 EPA 추진 협정 이행을 위한 실무협상 진행 중
- 2016년 7월 몽골에서 개최된 ASEM 회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몽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EPA(경제 동반자 협정,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를 체결키로 합의했다. 2016년 10월 1차 공동실무연구단 회의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했고, 2017년 4월 2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추후 3차 회의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 화

- 주몽골 한국대사관 및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매년 한국주간행사(Korea week)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행사에서 한국음식축제, 전통의상 퍼레이드, K-POP 경연대회 등 다양한 문화교류행사를 선보이고 있다. 2019년 8월에는 울란바토르 시내 국립민족공원(서울숲)에서 개최됐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한-몽 정부는 2년마다 문화 부문에서 교류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 2019년 문화교류 협정을 갱신했다.

다 주요 경제 지표·동향·전망

경제지표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2.38	1.17	5.3	6.91	5.1
명목GDP (십억\$)	11.75	11.16	11.43	13.01	13.9
1인당 GDP (PPP, \$)	11,857.18	11,878.47	12,515.55	13,451.18	14,308.99
1인당 명목 GDP (\$)	3,842.54	3,576.82	3,595.38	4,017.22	4,132.66
물가상승률 (%)	5.88	0.49	4.62	7.65	7.3
실업률 (%)	7.5	10	10	10	7
수출액 (백만\$)	4,669.3	4,916.3	6,200.7	7,011.7	7,619.7
수입액 (백만\$)	3,797.5	3,358.1	4,335.5	5,874.8	6,127.4
무역수지 (백만\$)	871.8	1,558.2	1,865.2	1,136.9	1,492.3
외환 보유고(백만\$)	1,323.1	1,296.3	3,008.1	3,549.1	4,348.6
이자율 (%)	13	14	11	11	11
환율 (자국통화)	1,970.31	2,140.29	2,439.78	2,472.48	2,663.54



경제 동향

- 몽골 경제는 3C[Copper(구리), Coal(석탄), China(중국)] 및 FDI(외국인 직접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세계 광물 가격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세계 광물 가격이 비싸고 광물 수요가 높았던 2011년에는 몽골은 17.3%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국제 자원 가격의 급락과 함께 중국 경기 둔화 및 자원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급감해 2016년 1.2%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했으며 이는 IMF 및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의 효과로 평가되고 있다. 2017년 2월 몽골 정부는 과도한 대외부채 상환능력 부재로 IMF 체제를 수용했으며 2017~2020년간 시행되었다. IMF 지원금과 별도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규모는 IMF 4억 4,000만 달러를 포함 총 55억 달러 상당의 규모이다. 몽골 정부는 IMF 등의 국제 금융을 지원받아 재정 건전화 대책을 구축하고 있다.
- 몽골의 외국인투자유치(FDI)는 2011년을 정점으로 최고치인 4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지속 감소세를 보여 2016년에는 순유출 -41억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7년 IMF 차관 도입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투자자 심리회복으로 2018년에는 FDI는 2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해 6년 만의 최고치 기록이자 전년대비 47.8% 상승했다. 이어서 2019년에는 23억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0년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코로나 19 대응조치로 강력한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외국인 입국제한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감소, 교역감소 등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따른 여파로 파악된다. 2020년 5월 기준 몽골 FDI는 5억 8,08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감소한 상태이다.
- 몽골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2011년에 모든 경제지표들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최고 정점에 이르렀으나 이후 국제 자원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2016년까지 경기불황기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IMF체제 수용 이후 몽골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2020년 5월 IMF체제를 졸업하는 등 호조세를 보였으나,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회복 기조가 위축되고 있다.



경제 전망

- 국제유가 하락, 수출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 코로나 19로 인한 다양한 영향으로 2020년 몽골 경제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내륙국인 특성상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로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몽골 경제도 중국, 러시아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회복 속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은행은 올해 몽골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하였으나 아시아개발은행은 -1.9%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몽골은 2012년 광업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 외국인직접투자자 신뢰도 저하로 FDI 감소가 유지되고 있으며, 과도한 정부 지출 및 외환보유고 하락 등의 원인으로 미국달러에 대한 투그릭 환율이 하락하였다. IMF 체제 편입으로 지원금을 확보해 환율이 IMF 체제 수용 전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원자재 수출 확대 및 오유틀고이 광산(구리, 금) 2단계 개발로 FDI 자금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환율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몽골의 대외무역은 2014년부터 3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2017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의 광물 수요 증가 및 세계 광물 가격 상승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몽골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며, 대중국 수출에는 석탄, 구리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몽골의 대외무역은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했으며, 수입은 8.7%, 수출은 4.2% 각각 증가했다.
- 2020년 상반기 몽골 경제성장률은 -9.7%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광업 부문이 29.4%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2020년 7월 기준 몽골 대외무역은 67억 3,700만 달러(-16.7%)로, 수입은 29억 4,200만 달러(-16.1%), 수출은 37억 8,800만 달러(-17.1%)를 각각 기록하는 등 올해들어 대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02

산업안전보건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 개요	07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07
다. 산업재해 현황	11

2 산업안전보건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 개요

■ 몽골 산업안전보건 발전과정 및 현황

- 몽골에서는 1990년 이후 시장경제의 변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로 대두되었다. 노동부는 노동문제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개선을 위한 법적 체계의 확립,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및 작업환경 개선방안을 실행하게 되었다. 몽골의 노동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1997년 이후 부터 집중적으로 재해예방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04년에는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 첫째는 사업장의 안전보건환경의 개선이고, 둘째는 산업안전정보시스템의 개선이며, 셋째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또 1998년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55조 협약을 비준하고, 이 비준내용에 적합한 노동법의 제정을 위하여 조항을 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 이 개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한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16개 조항이 재정되었다. 노동법의 제6장 또는 제81조부터 제99조까지 내용은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작업환경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작업환경은 사업주가 작업장의 환경을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작업장, 공장, 기계, 장비, 보호구, 소방안전 및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 실행,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의 기록유지, 산업재해나 화학물질과 직업병에 기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작업자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명문화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부 조직체계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4장 21조는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다음과 같은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확립 및 시행
-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을 위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외국 및 국제기관 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체결, 해제
-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확립 및 시행하기 위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홍보와 통계기관의 설치 및 규정
- 유관기관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분석·조사 수행
-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관한 규제 제정
- 기타 법령에 명시된 권한과 의무 시행

■ 산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노동사회보장부(MLSP,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Protection)에서 수행하며 부총리 산하의 전문감독원(GASI,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은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감독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안전보건 연구 및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한 조직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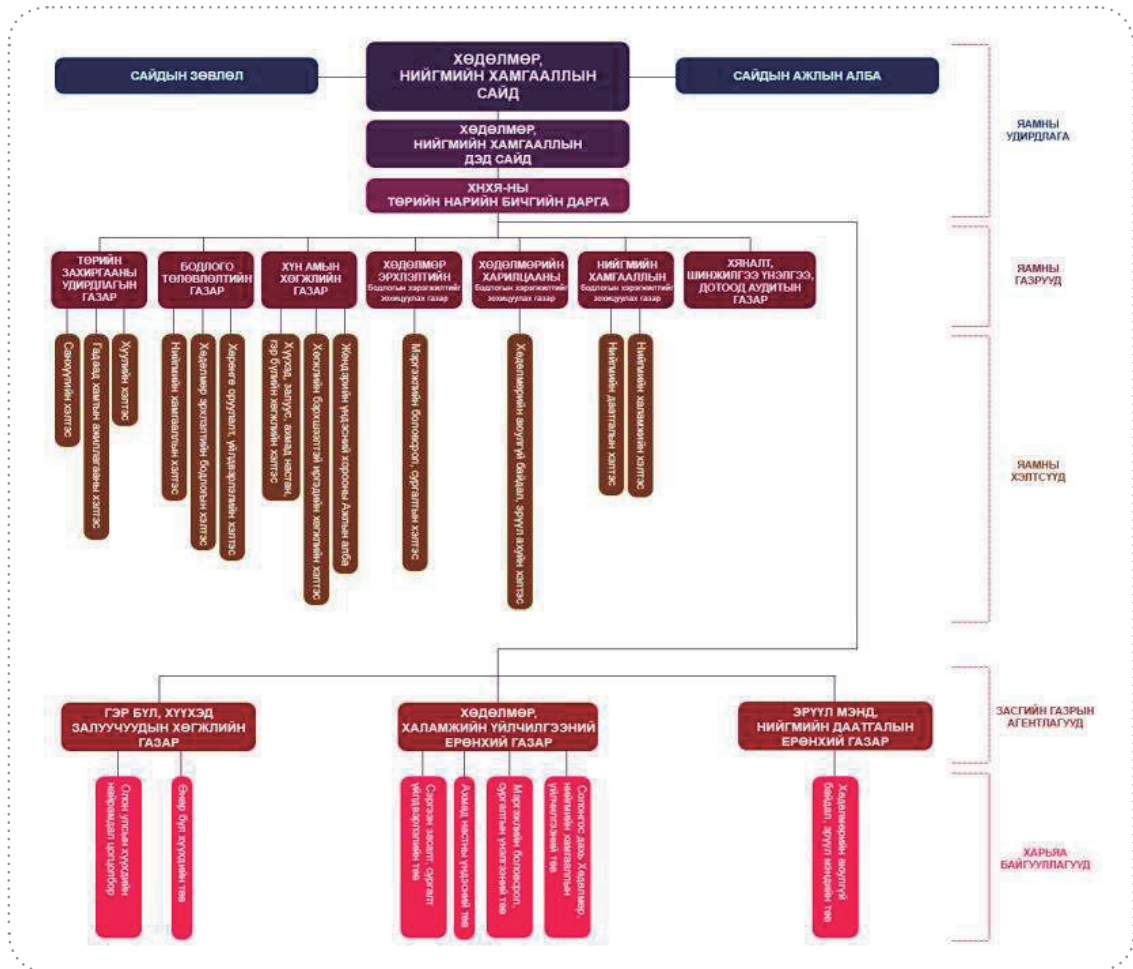
○ 노동사회보장부(MLSP,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

- 노동사회보장부의 기능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증진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동자 직업 교육훈련 정책 및 관련 법규 집행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개발 및 시행

○ 조직 및 조직도

- 노동사회보장부는 노동관계정책조정국*, 금융 및 경제국, 행정관리국, 고용정책국, 직업교육훈련정책조정국, 감사평가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고용서비스, 연구 및 정보센터와 산업보건센터가 있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는 노동관계정책조정국에서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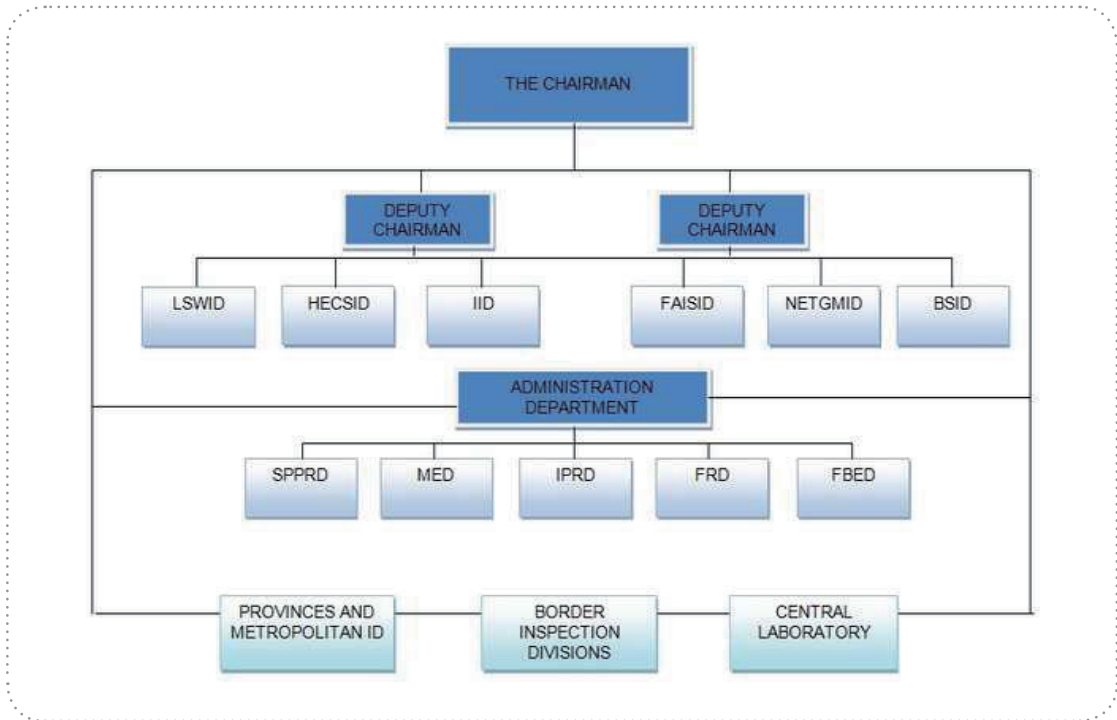


■ 국가 전문감독원(GASI, General Agency for Specialized Inspection)

○ 국가 전문감독원의 기능

- 법과 규칙 및 감독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적인 감독 실시
- 국민 건강에 악영향 방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작업, 제품 품질관리 등을 위한 국가적인 행정 감독 실시
- 국제적인 협력 및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

○ 국가 전문감독원 조직도



■ GASI 산하 노동·사회복지감독부(LSWID, Labour and social welfare inspection department)

○ 노동·사회복지감독부 업무

- 정부의 특정 감독관리 법규와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사회복지 분야 감독 실시
- 전문기술 지원과 감독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 및 역량 개발
- 전문 감독을 위한 기준, 규정 개발·제정 및 집행
- 양질의 감독 업무 제공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제거

○ 국가 전문감독원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임무

-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준수 감독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신고
- 역학조사
- 건설현장 감독 실시
- 감독관은 일반적인 근로감독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화학물질 취급, 급성중독, 고령근로자, 인간공학, 화학물질, 육체적, 생물학 및 심리적인 분야의 작업환경 관련 요인 감독과 개인 보호구 및 장비에 대한 감독을 실시

■ 국립산업보건연구원

○ 국립 산업보건연구원 역할 및 개요

- 국립산업보건연구원은 정부기관으로서 사업장에서 작업환경과 아울러 유해위험 요인, 독성 및 고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 주요 기능으로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측정, 기준 제안 및 자문 실시, 직업병 조사, 직업병 예방을 위한 감시, 진단, 치료 및 재활 실시
- 국립산업보건연구원은 몽골 사회복지부 산하기관으로 경영부, 직업병 및 작업환경부로 구성되어 있음

■ 사업장 환경 시험 및 분석 센터(Workplace Environment Testing and Analizing Center)

- 2009년 설립이후 사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시험 및 분석을 위한 평가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

■ 기타

- 기타 몽골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 몽골 국립 의과대학
- 몽골 표준측정센터
- 몽골 경영자 총연맹
- 몽골 노동자 총연맹
- 몽골 과학기술대학교

㉔ 산업재해 현황

몽골의 노동사회보장부(MLSP,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rotection)의 발표에 의하면, 산업재해는 감소추세였으나 2019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재해자 336명, 사망자 52명으로 전년 대비 재해자는 18.7%로 증가 추세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10 - 2019

연도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산업재해 및 사망자			
	총	증가/감소		총	유형별		
		절대값	%		경증	중증	사망
2010	366	-	-	398	177	141	80
2011	403	37	10.1	431	214	142	75
2012	400	-3	-0.7	424	172	165	87
2013	406	6	1.5	425	164	210	51
2014	333	-73	-18.0	363	119	186	56
2015	404	71	21.3	404	147	209	48
2016	332	-72	-17.8	332	142	159	31
2017	332	0	0.0	332	120	185	27
2018	283	-49	-14.8	283	106	147	30
2019	336	53	18.7	336	138	146	52

사망자의 경우 2010년 이후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9년 52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경증 재해 역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발생 건수, 기업 형태, 2016-2019년

기업 형태	2016	2017	2018	2019
총	332	332	283	336
주식 회사	34	49	18	27
제한 책임 회사	134	121	148	189
전원 책임 조합	8	7	2	1
일부 조합원 책임 조합	2	-	-	-
협동조합	-	1	-	-
국유재산 산업체	27	28	18	33
지방자치단체 재산 산업체	11	22	12	21
정부지원 기관	108	96	78	60
비정부기관	5	4	1	3
기타	3	4	6	5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201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를 경제 활동 분야로 살펴보면, 80건(23.8%)은 광산 및 채굴, 39건(11.6%)은 운송 및 창고업, 38건(11.3%)은 건설업, 27건(8.0%)은 기타 서비스 분야, 24건(7.1%)은 가공업, 23건(6.8%)은 수도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및 청소업, 22건(6.5%)은 정부행정 및 국방업무, 의무적 사회복지, 16건(4.8%)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나머지 67건(19.9%)은 기타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 피해자, 연령 및 성별로, 2016-2019년

연령	2016	여성	2017	여성	2018	여성	2019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18세 까지	2	-	2	1	2	-	6	1
18-24 세	27	4	22	6	34	9	47	5
25-34 세	118	28	114	27	95	12	113	21
35-44 세	70	24	84	20	71	26	94	29
45-59 세	110	56	108	50	77	34	75	32
60세 그 이상	5	3	2	1	4	2	1	-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은 25세-34세다. 통계에 의하면, 35세 이상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35세 이상의 사람들은 업무 능력 및 경험이 축적되는 반면에 노동안전 및 보건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사고 피해자의 26.2%는 여성들로 집계된다. 사고 피해자를 연령 및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24세까지 중 11.3%, 25세-34세 중 18.6%, 35세-44세 중 30.9%, 45세 이상 중 42.1%는 여성이었다. 통계를 보았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들이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를 당하는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 피해자, 연령 및 성별로, 2016-2019년

경제 활동 분야	2016		2017		2018		2019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농업, 산림, 어업, 수렵	5	1	2	-	6	1	3	-
광산 및 채굴	61	9	55	4	73	7	80	2
가공업	32	6	62	9	26	12	24	4
전기, 가스, 증기, 환기	19	5	5	2	7	-	12	-
수도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및 청소업	5		11	3	9	3	23	3
건설업	21	2	15	3	17	1	38	5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오토바이 수리 서비스업	8	1	5	2	7	2	8	2
운송 및 창고업	19	3	21	5	27	2	39	8
숙박, 주택, 요식업 서비스	5	4	4	2	4	2	11	7
정보, 통신	8	3	4	2	3		5	1
금융 및 보험업	7	5	13	9	7	5	10	3
전문 과학분야 및 기술활동	-	-	2	-	-	-	3	2
운영 및 업무 지원관련	3	-	2	1	4	2	-	-
정부행정 및 국방업무, 의무적 사회복지	43	18	36	9	34	15	22	9
교육	33	18	32	20	16	7	14	13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36	26	35	24	25	20	16	15
예술, 공연, 행사	1	1	1		1	1	1	
기타 서비스 분야	23	10	24	8	15	2	27	14
인력 고용 가정집 활동	-	-	1	1	1	-	-	-
국제기구, 대표소 활동	3	3	2	1	1	1	-	-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광산 및 채굴, 운송 및 창고업, 건설업, 수도공급,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및 청소업 분야에서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인한 재해는 대부분은 남성들이며 교육,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에서의 재해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계되었다.



2019년에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전체 남성들 중 78명(31.5%)은 광산 및 채굴업, 33명(13.3%)은 건설업, 31명(12.5%)은 운송 및 창고업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전체 여성들의 15명(17.0%)은 국민건강 및 사회복지, 14명(15.9%)은 기타 서비스 분야, 13명(14.8%)은 교육분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 피해자, 직업군 분류, 2016-2019년

직업군 분류 а л	2016	2017	2018	2019
총	332	332	283	336
매니저	9	7	5	8
사무직	46	48	54	30
기술자 및 그 보조원, 전문직	33	28	25	26
사무실, 서비스업 노동자	21	21	18	16
유통, 서비스업 노동자	8	2	4	9
농업, 산림, 어업관련 종사자	2	-	1	-
생산, 건설, 수공업관련 직종, 서비스업 종사자	43	26	37	51
기초 장비, 기계 오퍼레이터, 설치자	36	72	38	45
일반 직종	111	105	91	142
국방관련 직종	23	23	10	9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직업군 분류로 보았을 때 2019년에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인한 재해자 142명(42.3%)은 일반 직종, 51명(15.2%)은 생산공정, 건설업, 수공업 및 이와 관련 작업, 서비스업, 45명(13.4%)은 기초장비, 기계 오퍼레이터, 설치자, 30명(8.9%)은 전문직, 26명(7.7%)은 기계 및 그 보조원, 전문직 그리고 42명(12.5%)은 기타 직업과 관련된 사항이다.

2016-2018년 사이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당한 10명중 3명은 일반직종 및 전문직종의 노동자들인데 반해, 2019년에는 재해자 비율이 10명중 4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반 및 전문 직종 노동자 대부분이 임시 노동자들로 노동안전, 보건관련 표준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고 고용되거나 해당 노동자들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 피해자, 연령 및 성별로, 2016-2019년

근무 기간	2016		2017		2018		2019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1개월	32	4	12	2	19	1	32	2
1~5개월	24	6	40	12	35	6	38	3
6~11개월	9	1	15	6	16	5	20	5
1~2년	53	17	52	12	50	11	83	13
3~4년	38	10	38	13	27	5	23	7
5~9년	65	18	44	11	46	10	45	15
10~14년	27	12	42	12	31	10	42	17
15~19년	29	11	26	6	14	8	21	8
20년 이상	55	36	63	31	45	27	32	18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201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의 근무 기간을 살펴보면, 32명(9.5%)은 1달까지, 38명(11.3%)은 1-5달, 20명(6.0%)은 6-11달, 83명(24.7%)은 1-2년의 근무 경험이 있고, 23명(6.8%)은 3-4년, 45명(13.4%)은 5-9년, 42명(12.5%)은 10-14년, 21명(6.2%)은 15-19년, 32명(9.5%)은 20년 이상의 근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으로 사고를 당한 2명 중 1명은 2년 이내의 근무 경험을 가진 노동자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몽골의 고용노동 유관기관들의 미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안전, 보건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안내, 교육의 실시가 요구된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발생 환경 기준, 2016-2019년

사고 발생 환경	2016		2017		2018		2019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생산 현장	90	18	103	17	75	16	79	12
생산 외부 환경	19	7	15	4	16	4	27	8
건설, 건설 현장	15	2	17	1	17	-	22	1
광산	35	3	42	3	36	1	78	1
기관 (사무실)	50	32	43	23	37	23	33	22
공공장소	31	18	29	14	32	13	17	9
기타 환경	92	35	83	43	70	26	80	35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관련 분석에 있어 사고가 발생한 환경, 원인 등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해당 환경에서의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을 감소시킬 수 있다.

201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발생 환경의 경우, 79건(23.5%)은 생산 현장, 78건(23.2%)은 광산 현장, 33건(9.8%)은 기관 및 사무실, 27건(8.0%)은 생산 외부 환경, 22건(6.5%)은 건설업 현장, 17건(5.1%)은 공공장소, 50건(23.8%)은 생산 및 서비스관련 기타 현장에서 발생했다.

생산 현장의 내부 및 외부 환경에서 사고를 당한 5명 중 4명(81.1%)은 남성이며, 또한 광산 및 건설업,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인원 중 98.0%는 남성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기관 및 사무실에서 사고를 당한 3명 중 2명(66.4%)은 여성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발생 원인, 2016-2019년

사고 발생 원인	2016		2017		2018		2019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	141	79	121	52	93	42	112	45
떨어지는 물체에 부딪힘	29	2	26	7	32	3	31	7
물체 위를 밟거나 고정 및 이동 물체에 부딪힘	20	3	29	9	21	2	25	5
물체 사이에 끼임	35	6	50	12	48	9	49	5
힘을 가하거나 과격한 행동	13	4	10	3	8	1	13	3
가열, 화상, 동상	7	1	9	2	11	2	10	1
감전	8	-	4	-	5	-	9	2
독성 물질, 방사선 노출	2	-	42	4	4	2	12	1
외부 공격을 당하기	8	4	8	4	15	5	12	4
익수	3	-	2	-	1	-	7	-
기타	66	16	31	12	45	17	56	15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201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112건(33.3%)은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 49건(14.6%)은 물체 사이에 끼임, 31건(9.3%)은 떨어지는 물체에 부딪힘, 25건(7.4%)은 물체 위를 밟거나 고정 및 이동 물체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성별 분포로는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 피해자의 45명(40.2%)은 여성들로 집계되었다.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친 요소, 성별, 2016-2019년

사고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친 요소	2016		2017		2018		2019	
		여성		여성		여성		여성
총	332	115	332	105	283	83	336	88
기술 및 기계적 요소	50	8	76	8	60	10	54	9
운영제도상의 잘못된 활동	13	3	20	6	33	9	26	2
사람의 잘못된 활동	146	43	143	45	114	39	141	36
직업장 및 환경관련	123	61	93	46	76	25	115	41

자료 출처: 국가 전문감독원

2019년에 발생한 산업재해 및 급성중독 사고에 있어 영향을 미친 주요 요소를 살펴보면, 141건(42.0%)은 사람의 잘못된 활동, 115건(34.2%)은 직업 환경, 54건(16.1%)은 기술 및 기계적 요소, 26건(7.7%)은 운영제도 상의 잘못된 활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에 사고를 당한 여성 5명 중 2명(46.6%)은 직업 환경으로 인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0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19
나. 안전인증·검사 제도	21
다. 위험성평가 제도	22
라. 근로조건 관련제도	23
마. 사회보험 제도	25
바. 벌금 제도	27

3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및 제도

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체계

■ 산업안전보건법 배경

몽골은 1999년 노동법을 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의무와 역할, 단체협약, 노동쟁의와 조정 제도, 근로조건, 노동위원회의, 벌칙조항 등을 골자로 총 14장 142개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노동법 제6장 제81조 내지 제99조까지 19개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8년 5월 22일 산업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며 총 9장 3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몽골 산업안전보건법은 2015년에 개정되었다.

■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안전·보건기준

제3장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산업안전·보건 관리기관의 조직, 권한 및 제정

제5장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관리

제6장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의 조사 및 보고

제7장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감독

제8장 산업안전·보건 위반자의 처벌

제9장 기타사항

※ 전문은 【첨부 1】참조

■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타 법령

- > 노동법(1999년, 2003년 개정)
- > 보험법(1995)
- > 사회보장법
- > 정부 관리법
- > 행정 책임법
- >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환경에 관한 법률 제155호(1998)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칙 및 기준

- 산업재해 및 급성독성 신고 지침
- 조기퇴직이 필요한 업종과 작업환경
- 개인보호구 및 보호의 관련 목록
- 유해화학 물질 중독 예방 제품 및 식품 목록
- 연간 건강진단 관련 사업주 지침
- 여성에 대한 금지 작업 목록
- 건설업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지침
- 개착식 광산 안전지침
- 굴착식 광산 안전지침
- 사용 금지 및 제한 화학물질 목록
- 유해위험 화학물질 목록
- 기타 산업안전보건 일반기준, 육체 위험요인 관리 기준 등 30여개의 산업안전보건 기준이 있다.

1) 헌법

몽골은 1924년에 몽골 최초의 헌법을 승인함으로써 정치와 경제의 근본적인 신념과 사회, 문화, 지적 의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동향을 정했다(1). 그 당시에 발전의 열쇠는 급속한 경제 성장이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많은 중소 규모의 공업 및 농업 시설이 1930년에 시작된 “산업화”라는 이름의 주요 경기부양책의 결과로 여러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농업 채택”, “유목민 통합 캠페인” 그리고 “위생 개선 활동”을 비롯해 1950년부터 1960년 사이에 일어난 여러 다른 캠페인이 뒤를 이었다. 이 새롭게 조직된 농업 및 공업 시설과 기관들이 최초의 산업안전보건 구조가 되어,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과 규정 그리고 노사관계, 보건, 안전을 규제하는 표준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몽골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국가적 정책이 몽골의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규정, 프로그램에 제안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구 헌법의 개정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권리와 건강하게 오래 살 권리에 대한 성명이 1992년에 채택된 헌법의 “인권과 정의” 장에 포함되어 있다. 이 제2장의 제16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임신, 휴직, 가족의 병간호,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일을 쉬어야 할 때, 해당 근로자는 복지 혜택과 개인의 건강 보호 및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1).

또한, 헌법의 이러한 주요 개념은 의회에 의해 정해진 정부의 장기 정책의 토대가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인구 개발과 공중보건에 대한 정책이다. 국가 발전 전망 같은 몽골의 장기 정책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살고 일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건강한 생활조건을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고, 공중보건 향상을 위해 교육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도 있다”라고 되어 있다. 2001년에 의회는 “업무상 상해 및 장애를 포함해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산업 환경, 사업장 안전, 산업보건 및 공중보건 표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언명하는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했다.

또한 정부는 2004년에 몽골 인구개발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 문서에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건강한 생활 및 작업환경과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공동체에 생산적하도록 훈련하고 교육함에 의해 개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몽골의 장기적인 정책에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 지침들이 정부의 조치 계획 및 몽골의 사회경제적 발전 연간 계획의 일부로 채택되고 있다. 그 결과, 몽골 정부는 2001년에 산업안전보건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채택했다.

나 안전인증·검사 제도

안전인증·검사 제도

○ 몽골에서 수출품을 포함하여 허가, 인증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근로자의 작업복 및 보호장비 제공)에 따르면 “특별 작업복 및 보호장비의 품질에 대하여 사업주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국제기준에 따라 생산되어 품질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전문감독원에서 어떠한 감독 및 수입 금지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작업복 및 보호장비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제정은 “표준화 측량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인증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규격 번호	규격 명
MNS 4930 : 2000	산업장비 안전기준
MNS ISO 13688 : 2000	작업복 기준
MNS ISO 13994 : 2003	유기화합물용 작업복(기밀시험)
MNS ISO 8194 : 2001	방사능 보호복
MNS 3306 : 1991	귀마개, 귀덮개 등

규격 번호	규격 명
MNS 5388 : 2004	안전모, 머리 보호구 등
MNS 5389 : 2004	안전모 및 보안경 겸용
MNS 5621 : 2006	안전모, 머리 보호구 등
MNS 5624 : 2006	방진 마스크
MNS 5620 : 2006	송기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MNS 5622 : 2006	손 보호 장갑
MNS 5623 : 2006	다리보호, 안전화 등
MNS 0012-4-007 : 1981	보호 덮개, 난간 등

다만, 기계 및 중장비, 기중기 및 운송 중장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이용 초기 실험 및 인증을 전문감독원에서 점검과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중장비 등록증 발급
- 자동차 설비, 중장비 기계 여권, 등록증, 조립 및 설치에 대한 기록 및 설계도
- 작동시 안전규칙 및 사용법(몽골어로)
- 자동차 설비의 실험 및 조절, 작동확인서 및 인수인계서
- 자동차 설비가 작동 중 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생명, 건강에 위험하지 않다는 관련 전문기관 확인서, 수출 측의 공식 확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기중기, 운송기계에 대한 요건 충족
- 수수료 납부 : 등록증 발급비 2,000 투그릭 및 검사 수수료 등 12,500 투그릭

다 위험성평가 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 몽골에 제조공장을 설립할 때 공장에 설치된 기계, 전기, 화재 등의 안전을 위하여 공장의 위험성평가를 해야 합니까?

몽골의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아직 위험성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보건경영평가제도(우리나라의 KOSHA 18001)를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자료 등을 포함하여 시범적으로 화력 발전소 등 대기업(89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에 따르면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설립목적에 따라 아래와 같은 타법에 대한 규제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 Барилгын тухай хууль 건설법
- > Байгаль орчныг тухай хууль 자연환경법
- > Галын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화재안전법
- > Эрчим хүчний тухай хууль 에너지법
- > Цөмийн энергийн тухай хууль 원자력 에너지법
- > Төрийн хяналт шалгалтын тухай хууль 공무감독 검사법
- > Монгол Улсын засаг захиргаа, нутаг дэвсгэрийн нэгж, түүний удирдлаг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자치기관, 지방관리법
- > Газрын тосны бүтээгдэхүүний тухай хууль 원유 품질법
- > Гамшгаас хамгаалах тухай хууль 자연재해보호법
- > Ариун цэв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소독법
- > Ашигт малтмалын тухай хууль 광물법
- > Хөдөлмөр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노동법
- > Химийн хорт болон аюултай бодисын тухай 화학 독성 및 위험물질
- > Тэсэрч дэлбэрэх бодис, тэсэлгээний хэрэгслийн эргэлтэд хяналт тавих туха 폭발 물질, 폭발 도구감독

근로조건 관련제도

위험성평가 제도

○ 몽골에서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소임금제도가 있습니까?

2020년 최저임금은 148달러(42만 투그рик)를 지불해야 하며 급여는 최소 2개월에 한번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급여는 시간당, 일당, 주당으로 계산되며 노동자 개인의 요청에 따라 선지급이 가능하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이며 토,일요일은 휴무로 정해져있다. 지정된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주마다 상이하지만 초과 근무수당은 일반적으로 1.5배 수준, 공휴일 근무수당은 2배 수준이다.

11개월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은 연간 15일간 휴가를 보장 받으며 정기적으로 일하는 조건 하에 부가적 휴가가 주어지며 고용연차에 따라 다르다.

6~10년 : 3일 / 11~15년 : 5일 / 16~20년 : 7일 / 21~25년 : 9일 / 26~31년 : 11일 / 32년 이상 : 14일



아동보호법에 따른 노동금지 작업

○ 노동자 채용 시 아동(18세 미만) 보호를 위한 금지작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육가공 작업 > 알루미늄 산업(16세 이하) > 공항 활주로에서의 작업 > 위험한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작업 > 고고학 발굴 > 벽돌제조 작업 > 전선작업 > 정신질환자 간호 > 직물제조(14세 이하) > 기차역에서 Catering 작업(14세 이하) > 석탄작업, 연돌 청소작업(14세 이하) > 원형톱 또는 위험한 기계를 이용한 절단 작업 > 농작물 작업 > 건설, 또는 해체작업 > 크리스탈, 유리 제조작업 > 서비스업(16세 이하) > 나이트클럽, 바·카지노, 서커스 등 엔터테인먼트 관련 작업 > 굴착공사 > 화재, 가스 구조작업 > 임업 > 움직이는 기계류(청소, 수리 등)의 작업	> 중매 작업(16세 이하) > 해양 작업 > 광산, 운반, 지하 작업 > 석유탐사, 석유와 관련된 작업 > Oxyacetylene가스를 이용한 수동가스용접과 관련된 작업(16세 이하) > 페달, 크랭크로 작동되는 장비의 작업(16세 이하) > 소금, 염전 가공작업 > 선박 작업(16세 이하) > 비누 제조 작업(14세 이하) > 스팀엔진 및 이와 관련된 장비의 작업 > 거리 장사 > 설탕 제조 작업 > 무두질 작업 > 섬유산업과 관련된 특수 작업 > 차량 운전 > 지하수 작업 > 수도 및 가스 산업에서의 작업 > 무거운 물건과 부하 작업 > 식물을 녹이거나 용접하거나 또는 그러한 금속과 관련된 작업 > 법정, 감옥, 보호관찰 작업
---	--



마 사회보험제도

몽골 사회보험제도

○ 몽골의 사회보험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운영됩니까?

몽골 사회보험법 제1장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보험은 개인, 국가기관, 해당 절차에 따른 사업장과 기관 등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통해 마련되는 사회보험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퇴직, 장애, 질병, 실업 등과 같은 보험사고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법에 의해 정해진 연금,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는 사회경제적인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몽골 사회보험제도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급여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몽골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헌법과 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몽골의 연금보험, 급여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은 헌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급여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 몽골의 사회보험제도의 가입 및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보험과 건강보험은 고용주 및 근로계약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가입하게 되며, 법률에 명시한 비율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고용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근로자에게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증서를 만들어 주며, 규칙에 따라 매달 보험료 및 수수료 등을 납부한 사항을 기록할 의무가 있다.

특히 계절적 특성이 있는 작업, 생산, 서비스업을 하는 기관이나 사업체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는 기간의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계산하여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사업장이나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일하는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는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몽골의 건강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된 사업장 가입자 노사는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임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에 따라 결정된다.

○ 몽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노동사회보장부의 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두고,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이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산업재해보험 및 예방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운용된다.

또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공단을 설립하여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즉 몽골의 산업재해보험제도는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과 관련하여 노동능력 30%까지 잃은 경우 5개월, 31-50%를 잃은 경우 7개월, 51-70%를 잃은 경우 9개월, 71% 이상 잃은 경우 18개월분의 평균월급을 사업주가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산업재해, 중독, 직업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그 가족에게 36회 이상의 월급 및 월급과 동일한 금액의 보상금 1회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제도에 의한 급여는 사회보험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연금이나 보조금의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다.

산업재해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업현장에 따라 3가지로 차등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1급 현장 : 0.8%(정부, 공공기관, 은행금융업체 등)
- 2급 현장 : 1.8%(지질학 탐사, 도로공사, 물류운송 등 산업안전상 덜 위험한 현장)
- 3급 현장 : 2.8%(에너지, 도로공사, 물류운송 등 산업안전상 위험한 현장)

산업재해보험법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고 보험급여는 아니나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써 후유증상 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 벌금제도

벌금제도

○ 산업안전보건제도와 관련하여 몽골에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산업안전·보건 법령 위반자의 처벌)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처벌규정이 있다.

- 국가감독은 사업주의 과오로 인해 산업재해, 급성중독이 발생한 경우 35만~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판사와 근로감독의 국가감독은 산업재해와 급성중독이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자에게는 100만~20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150만~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감독의 국가감독 또는 판사는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을 은폐한 담당자에게 10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감독의 국가감독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관에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본 법 제8조 규정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생산용 건축물을 합작하여 소유한 사업장 및 기관에는 50만~1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생산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기계 및 설비류를 설치하며, 이를 개량, 확충 및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압력 장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노동보건에 관한 평가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30만~6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60만~7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장애자가 된 사유와 노동력을 상실한 이유 및 상실 정도를 잘못 산정한 관계기관의 직원 및 병원-근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2만 5천~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대하여 어떤 기관이 사업장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현장감독은 각 아이막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감독원의 전문감독관이 실시하며 현장감독 권한 등은【붙임 4】「정부 감독 및 감사에 관한 법」에 세부내용 적시한다.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의하면 현 사업장의 60%정도를 현장 감독하여 평균 10,000여개의 사업장을 현장감독하고 있으나 처벌 받은 업체 또는 처벌금액 등이 집계되는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현재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각 아이막에 파견되어 있는 전문감독원은 3~4명 수준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점차 이에 대한 절차 및 전문감독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4

노동시장 및 경제 전망

가. 노동시장	29
나. 경제 전망	31

4 노동시장 및 경제 전망

가 노동시장

근로조건 및 임금수준

○노동법에 따른 몽골의 근로조건 및 임금 수준 등은 어떻게 됩니까?

2020년 6월 기준 몽골의 전체 인구는 332만명(통계청, 2020)으로 이 중 46%가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 가운데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213만명이다. 몽골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 비교하여 극히 인구가 적은 편이다.

총인구 중 젊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평균 수명은 70.2세이다. 최근의 급속한 경제발전추세와 더불어 특히 광물자원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몽골에서는 노동력 수요 공급의 불균형 현상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중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특수직종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업률은 비교적 높은 7%(KOTRA, 2020)에 머물러 있다. 이처럼 노동력의 수요공급에 불균형이 발생한 원인은 중노동 및 저임금 때문에 국내에서의 노동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가 높은 임금을 받고 일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몽골은 노동력 수출국에 포함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최근 약 12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외국에서 노동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에만 몽골인 노동자 약 4만 6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 보장

근로계약 하에 있는 사업주와 고용인은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제시된 대로 매달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 계약서에 서명 후 사회 및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달 납부에 대한 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 임금

2020년 현재 최저 임금은 월 420,000 투그릭으로 급여는 최소 격월로 고정된 날짜에 지불 되어야 하며 급여는 시간당, 일당, 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하루당 8시간 일하도록 되어 있다. 연속 이틀 일하는 경우 휴식시간은 최소 12시간이 되어야 한다.

○ 유급휴가

직원은 연차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고,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일이 주어진다. 기본 연차 휴가 이외에 직원은 정기적으로 일하는 조건 하에 부가적 휴가일이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 고용연차 6~10년 - 3 일
- > 고용연차 11 - 15년 - 5 일
- > 고용연차 16 - 20년 - 7 일
- > 고용연차 21 - 25년 - 9 일
- > 고용연차 26~31년 - 11 일
- > 고용연차 32 년 이상 - 14 일

○ 근로 계약의 종료

다음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 > 사업주 및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 > 계약기간의 종료 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경우
- > 법령에 명시된 유권기관의 요구 시
- > 부당해고 노동자의 종전 업무 복직 명령을 받을 시
- > 노동자가 징집된 경우
- > 노동자의 범죄로 형 집행 판정이 유효한 경우
- >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경제 전망

경제 및 투자 현황

○ 몽골 경제 현황과 주요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체제전환 등의 불황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과 하이퍼인플레이션 등으로 일정 기간 경제침체를 겪었다. 몽골경제는 체제전환 초기에는 1993년까지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시현하고, 1994년 이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기 시작한 이후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시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 1996~1999년 기간 중 평균 3.9%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0년 대중반까지 가파르게 성장했던 몽골경제는 비록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급격한 성장을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으나, 다시 빠른 회복세를 보인다. 2010년까지 몽골의 경제발전 과정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한 ‘체제 전환초기’(1990~95년),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연평균 4% 성장을 달성한 ‘경제 구조조정 가속기’(1996~99년), 물가안정과 산업생산 및 대외무역의 지속적 증가로 경제가 활성화된 ‘거시경제 안정기’(2000~08년 하반기),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일시적 충격과 급속한 회복을 경험한 ‘경제위기 및 회복기’(2008년 하반기~2010년)로 구분된다.

2011년 17.5%, 2012년 12.4%, 2013년 11.7%의 고도성장을 거듭했으나,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2014년에는 7.5%, 2016년에는 1.2%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IMF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받은 지원효과로 분석된다. 몽골은 ‘17년 2월 과도한 대외부채 상환능력 부재로 IMF 체제를 수용하였으며, 2017~2020까지 시행되었다.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2019년)

구 분	단 위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성장률	(%)	2.38	1.17	5.3	6.91	5.1
명목 GDP	십억달러	11.75	11.16	11.43	13.01	13.9
물가상승률	%	5.88	0.49	4.62	7.65	7.3
1인당 GDP(PPP)	달러	11,857	11,878	12,515	13,451	14,308
실업률	%	7.5	10	10	10	7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서 전 세계적인 자원 부족 현상과 이에 따른 자원가격 상승에 힘입어, 주력 산업이자 수출품인 구리, 금, 석탄의 생산을 바탕으로 빈곤을 탈피하고 중소득 국가(middle-income country)로 발돋움하고 있다.

몽골의 주력 산업은 광업, 농·목축업, 관광산업 등이지만 광업이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 광업은 산업 총생산의 거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몽골경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몽골 경제성장률은 -9.7%로 광업 부분이 29.4%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투자현황

○국내기업들의 몽골의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몽골과 1990년 3월 수교하였으나, 2004년부터 몽골 투자는 급속히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31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 하반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의해 한국의 대 몽골 투자는 2009년, 2010년에는 연간 2,5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주춤했던 한국의 대 몽골 투자는 2011년 들어 전년대비 73% 증가한 4,305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대 몽골 투자가 2011년에 다시 급증한 데는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때 총투자금액의 절반이 넘는 2,268만 달러가 광업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1994년에서 2014년 6월 말까지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는 총투자건수 1,153건에 누적총액은 3억 6,721만 4,000달러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의 총 해외 투자건수의 0.87%, 총 해외

투자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대몽골 투자액이 매우 미미하며,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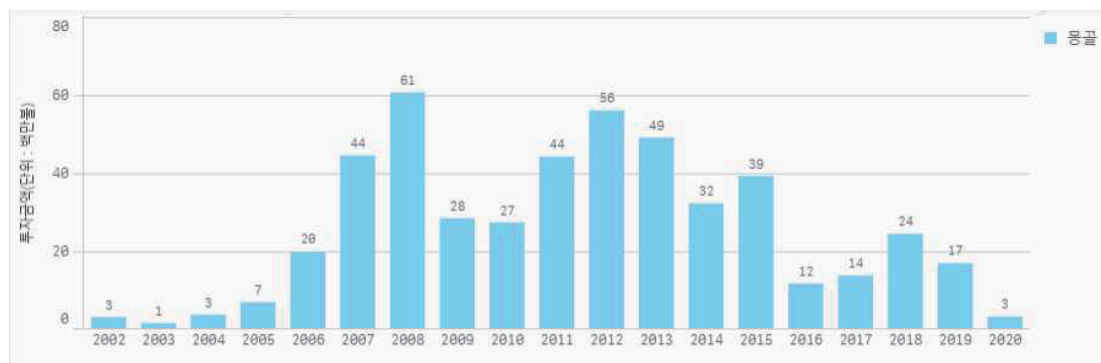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를 2014년 9월 말까지 누적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업부문이 101.25 백만 달러 (218건)로 전체 투자금액의 27%를 점하면서 1위를 차지하였다. 도소매업이 66.1 백만 달러(265건)로 17.6%를 점하며 2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에는 건설업이 52.6 백만 달러(135건)로 14%를 점하며 3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는 주로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위주의 소규모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2000년대부터 출판·영상, 부동산업, 광업 등 다양한 분야로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광업부문에 대한 투자는 2008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2018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소규모 광업투자가 27.4%, 도소매업 17.1%, 건설업 12.8%, 부동산 및 임대업이 12% 순이다.

한국의 대 몽골 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불, 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

몽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2015년~2019년)

분류	2018	2019	2020
신고건	85	93	21
신고액	43,605	26,086	24,220
신규법인수	26	45	9
투자액	24,281	16,729	2,977



첨 부

【첨부 1】 몽골 산업안전보건법(2008, 국문) 전문	45
【첨부 2】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2015년)	66
【첨부 3】 산업 재해,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	72
【첨부 4】 정부 감독 및 감사에 관한 법 전문	87



첨부 1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 ① 본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기본 규정의 확립, 정부행정중앙기관의 관리 감독 제도와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안전·보건 요건 및 기준 충족, 그리고 작업자와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령

- ①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헌법, 근로기준법과 본 법 및 이와 상응하게 제정된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 ② 몽골이 체결한 국제 조약에 본 법과 다른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국제 조약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산업안전·보건'이라 함은 작업 공정에서 노동 능력, 건강 유지, 안전보건을 갖추기 위한 사회, 경제, 계획, 기계 및 기술, 위생, 보건, 진료, 간호, 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위험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2. '산업안전'이라 함은 작업 공정에서 근로자의 건강 및 노동 능력에 끼치는 산업 유해·위험성 정도가 보건요구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뜻한다.
 3. '산업보건'이라 함은 작업 공정의 화학적·물리학적 독성 물질 또는 생물학적 유해 요소 등으로 인해 심신에 장애를 끼쳐 질병을 일으키고, 노동 능력을 단기간 또는 영구

히 상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뜻한다.

4. ‘작업환경’이라 함은 작업 공정과 관련하여 작업 활동 또는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작업 및 근로환경을 뜻한다.
5. ‘산업 유해 조건’이라 함은 건강에 해를 끼치고 질병을 일으키며 정신 장애를 유발하거나 노동 능력이 저하되고, 직업병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산업 유해 조건을 뜻한다.
6. ‘산업 위험성 조건’이라 함은 직무 완수 과정 시 급성 중독 또는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신체·건강에 위험을 끼치는 조건을 뜻한다.
7. ‘작업장 위험성’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작업장의 조건을 뜻한다.
8. ‘위험성 평가’라 함은 작업장의 위험성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9. ‘작업장’이라 함은 근로자가 직무를 완수하는 일과 관련해 참석해야 할 사업주가 관할하는 모든 장소를 뜻한다.
10. ‘급성 중독’이라 함은 생물학적 활성체 및 화학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심각한 중독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11. ‘특별 작업복’이라 함은 산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복장, 신발, 모자, 장갑 등의 장비를 뜻한다.
12. ‘개인 보호 장비’라 함은 산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를 뜻한다.
13. ‘공동 보호 장비’라 함은 산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요소로부터 두 명 이상의 근로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장비를 뜻한다.
14. ‘산업안전·보건 관리’라 함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과 목표를 규정 및 시행, 감독, 평가하고 유관기관을 운영하는 등의 종합 활동을 뜻한다.
15. ‘휴게 장소’라 함은 근로자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별도 마련하여 탈의실, 휴게실, 급식실, 화장실, 샤워실, 온실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뜻한다.
16. ‘작업환경에 기준한 작업장의 등급화’라 함은 작업 과정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유해, 가중 및 부담 등의 요소를 산업보건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17. ‘산업안전조건’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치는 산업 유해·위험성 정도가 산업



안전·보건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않음을 뜻한다.

18. ‘생산을 위한 기계 안전’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계 작동 시 설계 도면 및 기계 설명서 규정을 따르는 것을 뜻한다.
19. ‘산업안전·보건기준(기준)’이라 함은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뜻한다.

제4조 적용 범위

① 본 법은 다음과 같은 작업자 또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주와 근로자
2. 개인 사업자
3. 개인 간의 계약 근로자
4. 사업장 및 기관의 생산 실습자인 대학생, 전문대학생 등
5. 정식 군인, 계약 군인, 군 훈련 및 군 집회 참석자
6. 협동조합 및 상회 위원
7. 재소자
8. 몽골 토지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설립 사업장 및 기관의 몽골인, 외국인 및 무국적 근로자
9. 협력 계약서 및 산업 완수 계약서 또는 기타 조건하에 업무를 맡은 몽골인, 외국인, 무국적 사업자 및 근로자

제5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부정책 및 방침

-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은 근로자 또는 작업자의 신체와 건강을 유지 및 보호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다.
- ② 산업안전·보건 시행은 다음 규정을 따른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은 몽골의 모든 영토에서 통일되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의 요건과 기준에 따른 시행에 대해 상시 감독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 요건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기준

제6조 산업안전·보건 기준

- ① 산업안전·보건요건은 법령에 따라 규정되며, 근무 중인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통일되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기준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중앙기관과 협의하여 기준 문제 담당 기관이 관할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7조 생산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사항

- ① 생산용 건축물의 건축, 개량, 개축 등과 기계 및 설비 조립, 설치, 실험, 수리를 위한 서비스는 안전·보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② 본 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산업을 실행하는 경우 유관전문기관으로부터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생산용 건축물 공동소유 및 사용에 관한 요건

- ① 생산용 건축물을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소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 및 사용자들은 다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소유자 및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규례를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2. 생산 공정에서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를 사용하는 소유자 및 사용자는 이에 대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아 안전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
 3. 본 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한 파산의 책임은 파산



당사자에게 있다.

- ② 본 법의 제8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생산용 건축물의 공동소유를 금한다.

제9조 기계설비에 대한 요건

- ① 신체에 위험성이 예상되는 생산용 기계 및 설비 장비에 대해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기계 및 설비 장비 구조, 형태, 이동부(본체), 제어판, 비상 장비, 주변부(작업장, 출구, 계단, 난간, 보호 장비)는 안전 작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2. 기계 및 설비 장비에는 작동, 수리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용 설명서, 안전 작업 규례, 기계 설명서 등이 있어야 한다.
 - 3. 기계 및 설비 장비는 설치 또는 대규모 보수 공사를 한 후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재사용을 위한 검사, 승인·평가를 받아야 한다.
 - 4. 기계 및 설비 장비는 사용 설명서에 정해진 검증 기간에 수리 및 관리해야 한다.
- ② 기계 및 설비 장비 양도 시에는 사용 설명서, 등록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③ 전기 설비 장비는 제어판, 경보기, 밸브 및 방지 장치, 예상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구 등을 설치해야 한다.
- ④ 전기 설비 장치는 도면에 따라 조립해야 하며, 전문기관에서 접지 및 접지 하중 보증서를 받고 전기 안전 사용 규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⑤ 본 법 제9조 제1~4항에 규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계 및 설비 장비의 사용을 금한다.

제10조 기중기, 운송 기계에 대한 요건

- ① 기중기, 운송 기계는 결함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 ② 기중기, 운송 기계는 전문기관에서 점검□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기계 설명서 및 공인기관에서 정한 검증 기간에 실험, 관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본 법 사업주는 제10조 제1~3항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11조 압력 용기, 배관에 대한 요건

- ① 압력 용기, 수도관(배관)에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압력 용기, 수도관(배관)은 정해진 규례에 따라 실험, 관리, 확인 작업을 하며, 정상작동 상태를 유지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압력 용기 안전 사용 및 장기간 비사용 또는 보관 시의 사용 규정을 정해야 한다.
 3. 압력 용기, 수도관(배관)에는 용도를 표기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과 보호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화학독성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 취급에 대한 요건

- ① 사업주는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신체, 건강을 보호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에 관련된 기록을 작성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유관기관과 근로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③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를 취급하는 자는 해당 물체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 예방 대책에 관한 적절한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한다.
- ④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를 사용 및 취급하는 사업주, 기관, 근로자가 지켜야 할 요구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한다.
- ⑤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 사용 시 발생한 사고와 급성 중독의 경우, 산업재해와 같이 보고 조사 및 기록해야 한다.

제13조 화재 안전에 대한 요건

- ① 본 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자는 화재 위험 예방과 화재 진압에 관한 규칙,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근무할 의무를 지닌다.



- ② 화재가 예상되는 모든 작업장의 모든 위치에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비상구, 표지판을 설치하고, 화재 장비는 정기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며, 근로자에게 이 기구의 사용법을 훈련시키도록 한다.
- ③ 화재 안전에 대하여 개인, 사업장, 기관의 권리, 의무, 책임은 화재안전법, 민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 건강 진단

- ① 사업주는 보건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 생산, 업무, 서비스업상 필수적인 예비 건강 진단 또는 건강 진단을 받게 하여야 한다.
- ② 제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건강 진단을 받을 경우 경비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본 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자는 직무상 필요시 반드시 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④ 근로자가 건강 진단을 받는 것과 관련된 규례는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행정중앙기관에서 정하도록 한다.

제15조 근로자 작업복 및 보호 장비 제공

-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과 업무 특성에 맞는 특별 작업복 및 보호 장비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② 사업주는 특별 작업복, 보호 장비의 실험, 구매, 보관, 세탁, 수선 및 소독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특별 작업복 및 보호 장비의 품목과 사용 기한의 목록을 작성하여 규례를 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 ④ 특별 작업복 및 보호 장비의 품질에 대해 사업주는 전문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국제기준에 따라 생산했다는 품질 인증을 획득한 특별 작업복은 동항에서 제외된다.

제16조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요건

- ①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장 조건은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적합해야 한다.
- ② 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출입 시 장애가 없도록 설비해야 한다.

제17조 산업안전·보건 교육

- ① 작업자 또는 근로자와 사업주는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이 정한 규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단기 교육을 받고 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 ② 본 법 제17조 제1항에 명시된 단기 교육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실시된다.
 - 1. 신입사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2. 작업장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실시
 - 3. 산업 유해·위험성이 예상되는 작업장에서는 근무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 ③ 본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명시된 작업장에서는 필수 교육과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평가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전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평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 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단기 교육 프로그램 및 평가 관련 규례는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위원이 정하도록 한다.
- ⑥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전문직 훈련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은 교육법과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제18조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 ① 작업자 또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종합적 권리를 지닌다.
 - 1.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 요구가 충족된 작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2. 산업재해, 직업병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
 3. 근로자는 작업장의 조건, 건강상 장애가 생길 가능성, 산업 유해·위험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4. 근로자가 업무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산업안전 기준에 위반되거나 신체 및 건강에 해롭고 위험한 환경이 발생할 경우, 업무를 중지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를 협의하는 경우 본인이나 대표를 통하여 그 협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근로자 또는 작업자는 다음과 같은 총괄적 의무를 지닌다.
1. 산업안전·보건에서 요구하는 요건, 기준, 규칙, 기술상 규례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교육 평가 시험의 안전·보건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업무 과정 시 신체 및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규정에 따라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건강 진단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5. 특별 작업복, 보호 기구 등을 용도에 맞게 착용해야 한다.
 6.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및 업무 완수 방법에 대해 충분히 기술을 습득하고, 산재·급성 중독을 예방하며, 위험 및 산재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7. 본인과 타인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8.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요건을 충족시키며 업무에 임해야 한다.

제4장 산업안전·보건 관리기관의 조직, 권한 및 재정

제19조 산업안전·보건 관리기관의 조직

- ①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은,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중앙기

관과 그 부설기관인 직업병 및 근로조건 문제 담당 기관의 지방자치단체 감독관, 사업장 및 기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20조 국회의 권한

① 국회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 정책 확립
2. 비상사태 시 국민의 신체 및 건강 보호에 대해 정부,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과 그 외 유관기관의 권한을 규정한다.
3.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몽골의 국제 조약과 국제 협정의 체결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4. 기타 법령에 명시된 권한

제21조 정부의 권한

① 정부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확립 및 시행
2. 산업안전·보건 프로그램의 확립 및 시행을 위한 조치
3. 주어진 권한 내에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 타국 및 국제기관 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체결, 해제
4.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5.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을 확립 및 시행하기 위한 규정
6. 산업안전·보건 정보에 대한 홍보와 통계기관의 설치 및 규정
7. 유관기관을 통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분석·조사 수행
8.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대한 조사 및 기록에 관한 규제 제정
9. 기타 법령에 명시된 권한



제22조 중앙노동행정기관의 권한

①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행정중앙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시행
2.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정부행정중앙기관 및 기타 기관 아이막(도), 수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와 근로자의 대표기관 및 그들의 전문부서, 비정부기관의 산업 교류 촉진
3. 정부행정중앙기관 및 유관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로 부서간의 법률상 문서 작성 및 확립
4. 유관기관에 산업안전·보건 전문직 인사 관리에 대한 문제 건의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및 교육 평가 규정
6.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에 관한 보고, 산업 유해·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 대한 자료청 설치, 유관기관 및 공중에 통보
7.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문제로 국제 협력 활동 확대
8. 사회보험위원회에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 관련 세율 변경에 관한 사항 건의
9. 직업병과 작업환경을 관할할 기관의 설치, 구성, 인사 관리 및 규칙 확립
10. 기타 법령에 명시된 권한

제2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그의 권한

- ① 정부기관, 사업주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의 동수 대표자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비임원을 근로 문제 담당 국회의원 주도하에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규정 및 위원 선출은 양측 의견을 고찰한 후 근로자회의결위원회의 회장이 정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국가 정책 작성 및 이행 참여
 2. 산업안전·보건 문제에 관한 제안 및 제언 제시

3. 산업안전·보건,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원인 및 상황 분석, 심의, 제언, 유관기관에 제언 제시
4. 국제노동기구 조약의 참석에 관한 문제 해결에 대표자 참여

제24조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및 구의회의 권한

- ①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및 구의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이행을 충족하고,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예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해당 토지에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을 예방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승인 및 시행 감독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시행 및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예방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고 및 정보 심의·평가
 3. 산업안전·보건,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예방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고 시행 감독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책 및 조치 시행 시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사업장, 단체 및 개인의 참여를 충족하고 활동 연계 조정
 5.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제25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 ① 도지사 및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예방 조치에 필요한 예산 계획·시행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시행 감독
 3.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원인 조사와 예방, 조치
 4. 신체 및 건강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힌 중대 재해와 급성 중독 발생 시 피해 처리 및 긴급구조조치
 5. 근로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과 의논하고 해당 토지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문제 담당 직원에게 직업용 방법을 충족시키며 활동을 연계



6.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 ② 군수, 구청장, 면장 및 동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발령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민간의회 및 민간총회 최고의결 지방자치단체당의 발령 이행 관리
 - 2. 산업재해와 위험·유해 물질로부터 주민들을 보호, 예방하는 일에 기관, 사업장 및 개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 관리
 - 3.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제26조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재정

- ① 산업안전·보건 조치 재정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1. 국가 예산 및 지방 예산
 - 2. 국내외 기관, 사업장 및 개인 기부금
 - 3. 해외 차관 및 원조
 - 4. 법령으로 금하지 아니한 기타 재원
- ② 예산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공급 제품, 사업 및 서비스 비용의 0.3%, 사업장 및 기관의 생산 및 서비스 비용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산업안전□보건 및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 예방 조치에 사용해야 한다.
- ③ 본 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명시된 직업병과 작업환경 담당 기관의 활동비는 국가 예산에서 지원한다.
- ④ 개인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어떠한 조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장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제27조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위원회 및 직원

- ① 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 개선, 법령의 시행 및 감독 의무는 기관과 사업장의 사장/주인/사업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 ②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위원회 및 임원 고용 시 준수기준, 위원회 건본규정, 작업장 적용 모델은 근로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이 정한다.
-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직원으로 이 분야의 전공 취득자 또는 전문가를 채용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담당 직원은 사업주의 주도하에 근무하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④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직원은 안전, 보건 문제 외 직무 수행은 금한다.
- ⑤ 해당 기관의 기타 직원 및 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위원회 및 직원의 직무상 요구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

-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생산 과정에서 유발된 화학·물리적 독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는 작업장의 산업보건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환경을 구성하고 기술적 관리 조치를 취함
 2. 생산 과정에서 신체와 건강에 위협한 환경 발생 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위험환경을 긴급 처리
 3. 근무 과정에 예상되는 사고, 부상 및 질병으로부터 근로자를 예방·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도입
 4.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처리·관리 목적의 위험 평가
 5. 작업장의 작업환경 평가
 6. 작업장의 특징에 따른 규정, 지시, 규칙의 승인 및 준수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해 필요한 지식 습득
 8. 안전 작업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교육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안전규칙을 지시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자, 지시를 받지 않은 자, 교육 평가를 받지 않은 자는 직무 수행을 허가하지 않도록 한다.

9. 유해하고 위험한 성격의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유독 액체, 식품 및 음식 무료 제공
 10. 매우 덥거나 매우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강수가 새는 실외 및 난방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휴식 시간에 휴게실, 온실 또는 피난소 전용 시설물 제공
 11.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에 대한 정보를 기록, 작성하고 유관기관에 보고
 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시행의 감독 담당자를 작업장에 지체 없이 진입시킴
 1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고, 담당자가 요구하는 요건과 평가대로 일정한 조치 시행 및 재보고
 14. 산업안전·보건의 환경을 충족하는 조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매년 예산, 계획 또는 공동 계약서에 반영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
 15.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으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관련 법령대로 보상금 지급
 16. 본 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 규정에 명시된 자는 고용하는 직원들의 안전과 보건을 보장하는 작업환경 조성
- ②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 문제 담당 위원회 설치, 직원 임명 및 해직
 2. 산업안전·보건에 대하여 수행하는 조치, 그의 예산과 비용의 승인 및 이행
 3. 산업안전·보건의 규정과 규칙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본 법과 근로기준법, 기관 내부 규칙에 명시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장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의 조사 및 신고

제29조 업무상 사고 및 급성 중독 발생 시 수행 조치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걸린 개인과 근로자를 자비로 병원으로 이송하고, 필요한 진찰과 검사의 비용을 부담하며, 사고와 급성 중독의 피해를 처리하는 조치를 24시간 이내에 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 발생시 마다 정부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산재와 급성 중독을 지정·조사하고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급성 중독의 원인에 대해 조례·평가해야 할 권리를 보유한 비임원 상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 ③ 본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산업재해조례를 근로관리 국가감독이 감독하고, 급성 중독의 평가를 산업보건관리 국가감독이 감독한다.
- ④ 본 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산재의 조례 및 급성 중독의 평가를 감독한 국가감독은 다음 각호의 결정 중 어느 하나를 내려야 한다.
 1. 산재조례와 급성 중독의 평가 승인 및 확정
 2. 산재조례와 급성 중독의 평가를 거절한 경우 평가 제시
- ⑤ 사업주는 본 법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명시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산업재해 발생 및 급성 중독에 걸린 개인과 근로자가 평가를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전문 근로검사기관 및 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 ⑥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의 조사·등록 비용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 및 기관이 부담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지해, 직업병 또는 급성 중독에 대해 정한 규칙대로 아이막(도), 수도, 솜(군) 및 두렉(구)의 통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⑧ 사업주가 산업재해 및 급성 중독을 은폐하는 것을 금한다.

제30조 직업성 질병, 관련 업무 조정

- ① 직업병의 목록은 보건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이 정한다.
- ②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노동력의 상실, 그 규모와 기한은 병

원근로평가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1조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

- ① 사업장의 작업환경 평가는 전문기관이 시행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작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해당 작업장의 생산과 서비스 종류 및 환경이 변경될 때마다, 또한 화학 독성 물질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작업장 근로환경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장 근로환경 평가규칙은 근로 문제 담당 국가행정중앙기관이 정한다.

제7장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 감독

제32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이행 감독

-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시행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지는 권한 내에서 감독한다.
 1. 국회
 2. 정부
 3. 국가전문검사기관
 4. 법률로 권리가 주어진 기타 기관 및 담당자
 5. 아이막(도), 수도, 솜(군), 두렉(구)의 지방자치단체장 및 감독청
 6. 직원 대표, 비정부기관, 사업장 및 기관

제33조 산업안전·보건의 국가행정관리

- 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은 전문검사 국가중앙감독이 국가 행정 관리를 허락한 근로 검사 국가감독과 산업보건검사 국가감독이 시행한다.
- ② 근로검사 국가감독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장비와 기계의 안전, 테크닉 패스포트 기록 상태 검사
 2. 사업장과 기관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개인과 직원의 직무 수행의 검사 및 지시·상답
 3. 승강기, 운송 기계, 압력 장치 및 수도관에 대한 전문기관의 실험, 조절 및 승인 여부 검사
 4. 특별 작업복, 개인과 공동 보호 기구의 착용 및 사용 검사
 5. 산업재해 조사·등록, 산재 원인 평가, 상태 검사, 본 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에 대한 평가
 6. 장애인 고용 작업장은 기준 충족 여부 검사
 7.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 ③ 산업보건검사의 국가 감독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 사업장 및 기관의 산업보건 작업 관리 검사·지시
 2. 작업장 근로환경의 보건기준 충족 여부 검사·평가
 3. 근로환경 측정 및 조사의 산업보건 평가
 4. 생산용 건축물의 건축, 개량 또는 도면 설계 평가
 5. 특별 작업복, 개인과 공동 안전 보호 기구의 안전규칙 및 보건기준 충족 여부 평가
 6. 법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화학 독성 물질, 폭발 및 방사성 물질, 생물학적 활성체 사용 및 보관 감독
 7. 근로자용 휴게실 충족, 위생 기준 충족 여부, 근로환경의 장애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 결과 확인·지시
 8. 1차 건강 검진과 정기 진찰, 직업 및 작업 관련 질병 예방 조치를 근로환경의 측정 및 분석 지수와 관계시켜 평가
 9. 직업병 및 작업환경과 관련 질병을 확인하고 작업장환경에 관한 제안·평가 제시
 10.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 ④ 근로감독 및 산업보건검사의 국가감독은 다음과 같은 총괄적 권한을 보유한다.



1.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및 기준 요구에 대해 정보·상담 또는 이행 충족
2. 근로자의 건강 및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를 중단할 요구 제시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위반의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일정 기간을 사업주에게 제시
4.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상의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맡은 의무 수행에 있어 사업장 및 기관을 감사·상담
5. 생산용 건축물, 장비 및 기계 사용 인수팀, 실험위원회 구성원에 참여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개선에 있어 제안 제시
7.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그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 논의 및 해결 시 참여
8.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이행 충족에 대해 요구한 요건 및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의 신체와 건강 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자에게 벌칙을 부담하게 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에 제안 제시
9.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의 해당 생산, 서비스를 중지 및 금하는 제안을 유관기관에 제안하고 처리
10. 사업장과 기관, 당해 사업장과 기관의 부설 대리점과 지점의 운영, 또는 작업장과 기계 작동이 근로자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활동을 즉시 중지

제34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공중 감사

- ① 근로자의 권리 및 법적 권익을 대표하여 보전하고, 비정부기관은 공중 감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에 대해 정확한 정보 수요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위반을 처리하는 요구를 사업주에게 제시
 3. 근로 계약, 단체 협약상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맡은 의무 수행, 과정 평가, 정원에게 통지

4. 생산용 건축물, 장비 및 기계 사용에 대한 인수팀 또는 실험위원회 구성원에 참여
5.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는 데 참여·제안 제시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근로계약, 단체협약 및 관련 문제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협의 및 해결 시 참여
7.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거나 근로자의 신체 및 건강 보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담당자에게 벌칙을 부담하게 하는 제안을 관할기관에 제시

제35조 사업장 및 기관의 내부 감사

- ① 사업주는 제조공장, 제조과, 제조팀 및 작업장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총괄 요구, 기준 시행, 작업장의 위험 평가에 따라 취해진 조치 이행에 대한 내부 감독을 한다.
- ② 사업주는 내부 감독 과정에서 밝혀진 위반에 대해 처리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는 사업장 및 기관의 내부 감독을 하는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8장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위반자의 책임

제36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 위반자의 책임

- ① 근로감독의 국가감독은 사업주의 과오로 인해 산업재해,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경우 35만~5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② 판사와 근로감독의 국가감독은 산업재해와 급성 중독이 두 번 이상 발생한 경우 담당자에게는 100만~20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150만~3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③ 근로감독의 국가감독 또는 판사는 업무상사고·업무상질병·급성중독을 은폐한 담당자에게 10만~2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20만~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④ 근로감독의 국가감독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장 및 기관에 20만



~25만 투그릭의 벌금을, 본 법 제8조 규정의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생산용 건축물을 합작하여 소유한 사업장 및 기관에는 50만~1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⑤ 생산 및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설하고, 기계 및 설비류를 설치하며, 이를 개량, 확충 및 사용하게 되는 경우와 압력 장치,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전문감사기관의 감사를 받지 않고 노동보건에 관한 평가 및 허가를 받지 않은 담당자에게는 30만~60만 투그릭의 벌금을, 사업장 및 기관에는 60만~7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 ⑥ 장애자가 된 사유와 노동력을 상실한 이유 및 상실 정도를 잘못 산정한 관계기관의 직원 및 병원-근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2만 5천~5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9장 기타 사항

제37조 분쟁 해결

- ① 산업안전·보건 문제로 사업주, 작업자 및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몽골 국회의장 룽데장찬(D.LUNDEEJANTSAN)

첨부 2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개정 내용(2015년)

노동안전위생법 개정 관련

제1조. 노동안전위생법에 다음 내용의 제283조를 추가한다.

제28.3조. 기업·기관의 노동안전위생국, 관리자의 업무

28.3.1. 기업·기관의 노동안전위생 국, 관리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음:

28.3.1.1. 기업·기관의 특징과 조건에 맞게 노동안전위생 경영제도를 도입하는 일을 조직한다.

28.3.1.2. 기업·기관 차원에서 수행할 노동안전위생 계획을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승인을 받아 이행하는 일을 조직한다.

28.3.1.3. 발견된 위반을 제거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안전위생 위원회와 기관 근로자 대표자들을 참여시켜서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하는 일을 조직한다.

28.3.1.4. 작업장안전지침을 새로 또는 개정해서 작성하여,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준수하게 한다.

28.3.1.5. 근로자의 건강과 직업병을 연구, 평가하여 예방검진을 받게 하며, 질병 발생률 감소를 위한 일을 조직한다.

28.3.1.6. 근로자를 위한 생활의 정상적 조건을 충족하게 한다.

28.3.1.7. 노동안전위생 지침, 규정, 법을 위반한 근로자, 관리인에 대한 조치와 책임을 고용주에게 제의하여 해결하게 한다.



28.3.1.8. 법규에서 정한 기타 업무

제2조. 노동안전위생법 제3, 6, 23, 28, 30, 35, 36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항과 부분을 추가한다.

1) 제3조 3.1.20항 :

3.1.20. ‘노동안전위생관리자’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업·기관에서 노동안전위생의 경영과 조직의 활동을 고용주 직속에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안전위생관리자에는 해당업무를 책임지는 국, 부서의 관리인, 매니저, 직원, 산업위생사,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이해한다.

2) 제6조 6.2, 6.3 부분 :

6.2. 국가 노동안전위생표준(안)을 작성, 개정, 승인, 이행하는 일은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정부중앙행정기관에서 재원을 제공하고 정책조정의 통합관리를 하며, 조직한다.

6.3. 작업 중 공기에 발생하는 가스, 증기, 분진, 산소량, 공기압, 과도한 고저 온도, 습도, 이온화·비이온화 방사선, 고소음, 진동, 조명, 환기, 인체공학적 요인의 지표들이 국가 위생표준을 충족하는, 승인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제23조 23.3.5, 23.4 부분 :

23.3.5. 노동안전위생 분과위원회의 규정을 승인한다.

23.4. 국가 노동안전위생위원회의 활동비는 노동담당 내각장관, 분과위원회의 활동비는 해당문제 책임 내각장관의 연간예산집(集)에 매년 각각 배정한다.

4) 제28조 28.1 부분 :

28.1.17. 기업·기관의 노동안전위생 관리자, 위원회에 동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회, 비용, 예산을 제공한다.

5) 제30조 30.3, 30.4 부분 :

30.3. 병원-노동능력확인위원회의 규정을 보건담당 내각장관이 승인한다.

30.4. 직업병의 등록, 보고에 대한 규정은 보건과 노동 담당 내각장관이 공동으로 승인한다.

6) 제35조 35.4 부분 :

35.4. 생산 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총 발주기관은 도급업체를, 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를 노동안전위생에 대한 요구와 표준을 이행하는지 각각 내부감독 하며, 협력계약서를 체결한다.

7) 제36조 36.7, 36.8, 36.9, 36.10, 36.11, 36.12 부분 :

36.7. 근로자가 사전·정기 의무건강검진을 받게 하지 않은 관련 관리인에 최저임금의 5-10 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 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 부과하고, 근로자는 사전·정기 건강검진을 보완해서 받게 한다.

36.8.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안전위생교육과 안전작업지침에 대해 법적 위반을 한 관련 관리인에 최저임금의 5-8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감독관이 부과한다.

36.9. 노동안전위생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않는, 법규와 표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실시한 기업·교육기관에 국가노동감독관이 최저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36.10. 동법 31.2에서 정한 작업장에 대한 노동조건평가를 받게 하지 않은 관련 관리인에 최저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 부과한다.

36.11. 노동안전위생법, 규정,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전용 작업복, 보호구를 요구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최저임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감독관이 부과한다.



36.12. 동법 제 26조 2항에 따라 노동안전위생 법규 이행에 필요한 대책과 산업재해, 급성 중독, 직업병 예방대책을 위한 예산을 배정·집행하지 않은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15-2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감독관이 부과한다.

제3조. 노동안전위생법 제31조 31.1, 31.3 부분, 제36조 36.1-36.6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제31조 31.1, 31.3부분 :

31.1. 작업장에 대한 노동조건평가를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에서 승인된 규정을 바탕으로 한다. 인증은 표준화-계측학 담당 기관에서 발급한다.

31.3. 작업장에 대한 노동조건평가 규정을 노동과 표준화-계측학 담당 내각장관이 공동 승인한다.

2) 제36조 36.1-36.6 부분 :

36.1. 위법으로 인한 산업재해, 급성중독 발생 시 고용주에 최저임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나 판사가 부과한다.

36.2. 산업재해, 급성중독 사건이 2회 이상 발생 시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20-3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 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나 판사가 부과한다.

36.3. 산업재해, 급성중독을 은폐한 관련 관리인에 최저임금의 5-8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고용주에 최저임금의 12-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40-5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 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나 판사가 부과한다.

36.4. 노동안전위생표준의 요구사항 충족하지 않고 위반한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10-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동법 제8조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고 공장 건물 건축물을 공동 소유한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30-4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산업위생감독관이 부과한다.

36.5. 산업, 서비스용 건(축)물 건설, 장비·기계의 설치·교체, 확장, 사용을 위해 인계, 압력

용기·파이프 등에 대한 노동안전위생 요구를 충족하지 않은 자영업자에 최저임금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기업·기관에 최저임금의 10-1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국가노동감독관이 각각 부과한다.

36.6. 장애발생과 노동능력상실의 원인과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평가한 관련 관리인과 병원-노동능력확인위원회에 최저임금의 5-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판사가 부과한다.

제4조. 노동안전위생법 제26조 26.2부분, 제28조 28.1.4 및 28.1.1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6조 2부분 :

26.2. 예산기관은 국가예산으로 제공하는 물품과 서비스 비용의 최소 0.3%, 기업·기관은 생산, 서비스 비용의 최소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안전위생 법규 이행에 필요한 대책과 산업재해, 급성중독, 직업병 예방대책에 지출한다. 이 규정은 발주자, 도급업체, 하도급업체가 동일하게 준수한다.

26.3. 노동안전위생대책에 필요한 비용은 총 발주자, 도급업체, 하도급업체들이 도급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용도에 맞게 지출한다.

2) 제28조 28.1.4, 28.1.11 부분 :

28.1.4. 작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발견, 정의, 평가, 감소, 제거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한다.

28.1.11. 위험하고 유해한 산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기건강검진결과와 연구하거나 확인한 산업재해, 급성중독, 직업병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어,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제5조. 노동안전위생법 제19조 19.1의 “국가위원회” 뒤에 “분과위원회”을, 제28조 28.10의 “시설한” 뒤에 “생활”을 각각 추가한다.

제6조. 노동안전위생법 제17조 17.1, 17.2, 17.5 부분에서 ‘임시’를 삭제하여 개정한다.



제7조. 노동안전위생법 6.3에 사항을 새로 추가하여, 동법 제26조 26.3, 26.4 사항을 26.4, 26.5로 변경한다.

제8조. 동법은 2014년 ...월 ...일로부터 준수한다.

서 명

번역인의 메모 : '생활실'이란 주민, 근로자의 정상적 근무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한 별도의 시설로 탈의실, 휴게실, 식사실, 화장실, 샤워실, 추운 몸을 녹이는 용도의 방을 말한다. (동법 제3조 3.1.15.)

첨부 3

정부의 2008년 14호의 명령서의 첨부서

산업 재해 ,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규정

1. 총칙

- 1.1. 본 규정의 목적은 모든 형태의 사업체 기관(이하 '사업주'라고 함)에서 발생한 산재, 급성 중독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의 기록, 보고, 통보와 관련된 업무를 조정하는데 있다.
- 1.2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할 업무는 노동법, 산업안전 보건법, 사회보험기금에서 수급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보상금과 연금을 결정할 때는 법 및 관련 기타 법률, 본 규정을 준수한다.
- 1.3 본 규정을 몽골 영토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 사업주, 법에 다르게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이 동일하게 준수한다.
- 1.4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조사 및 기록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산재, 급성 중독 사고로 인해 근로자, 주민(이하 "피해자"라고 함))을 병원으로 이송한 교통비, 병원에서 치료할 때 필요한 약, 붕대 비용 그리고 노동 및 산업안전 보건 전문 감독원, 분석자의 업무 비용, 운반비, 사고 원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자금 등)-을 산재, 급성 중독이 발생한 해당 사업주가 전부 책임진다.
- 1.5 사회보험기금에서 수급하는 산재, 직업병에 대한 연금, 보상금에 대한 법의 2조의 2항에 명기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간주한다.
 - 1.5.1. 근로자가 작업장 및 부대 작업자에서, 또는 계약에 의해, 권력 있는 기관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 출장, 동원령에 따라 다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일어난 사고



- 1.5.2. 본사, 지사, 작업 본점, 지점 사이에 자주 왕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업무 시간에 모든 종류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 또는 걸어 다니다가 발생한 사고
- 1.5.3. 작업장에서 나가지 못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쉬다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업무를 끝낸 다음 작업장 및 장비 기계를 정리하다가, 옷 갈아입다가, 샤워를 하다가, 업무를 인수하다가 발생한 사고
- 1.5.4. 출퇴근 중 교통 수단을 이동하거나 보행 중 (본 사고를 정할 때 근로자의 집, 작업장 사이의 방향, 시간을 근거로 한다) 발생한 사고
- 1.5.5.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자연재해, 방사성 물질 및 화학물질의 영향, 생물학적 활성체의 갑작스러운 재해로 발생한 사고
- 1.5.6. 본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기타 기술적 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 물질, 생물학적 활성제로 인하여 질병 또는 중독에 걸린 경우
- 1.5.7. 자연 재해, 위독, 도구 또는 급성 전염병 발생 및 폭발 시
- 1.6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교통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 경찰서에서 발행한 평가서에 의해 사고를 국가 노동 감독원이 조사하여 확정한다.
- 1.7 사회보험기금에서 수급하는 산재, 직업병 연금 및 보상금에 대한 법의 2조3항에 명기된 다음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를 산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 1.7.1. 사업주의 지시 없이 본 업무 도중 또는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 1.7.2. 작업장에서 음주, 약물남용으로 인해 사고 당한 경우;
 - 1.7.3. 작업장 이탈, 산업 안전 교육 지시를 받았지만 기술 규정을 근로자가 고의 변경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

1.7.4. 범행을 치를 때 자기 몸을 다친 경우

- 1.8 주민들이 서로 계약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그리고 타인의 장비 기계를 임대, 기타 형태로 사용하는 도중에 일어난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계약서상에 따라 진 의무에 따라 조사하여 기록한다. 만약 계약서상에 이것에 대해 명기되지 않았으면 발주자 측이 일어난 사고,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손해 배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 1.9 국방부, 경찰국, 비상사태 기관, 법원 결판 수행 기관, 광산 구호단체에서 일어난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본 규정의 따라 조사하여 기록하고 손해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한다.
- 1.10 특허에 의해 외국으로 근로자를 송출하는 사업체 기관을 통해 송출된 국민이 외국에서 근로하다가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와 관련된 보상금 문제를 고용한 사업체 기관이 해당 나라에서 준수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해결한다. 외국에서 일하다가 산재를 당한 국민이 양 국간의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산재, 직업병 보험에 가입했으면 특허에 의해 외국에 근로자 송출하고 있는 기관이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한다.
- 1.11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하는 과정에서 부검, 전문기관의 조사, 평가를 받으려 노동 및 산업보건 국가 감독이 요청한 요구 사항들을 관련 기관이 신속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2. 산재, 급성 중독의 조사, 기록 업무를 집행하는 위원회, 그의 업무 규정

- 2.1 사업주의 결정으로 산재, 급성 중독을 조사, 기록할 위원회를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인 3명 이상의 회원 구성으로 설립하여, 위원회장을 임명한다.
- 2.2 아이막, 수도, 솜, 구청에서 1명,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 각각 2명의 구성으로 도지사장, 구청장의 명령으로 설립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난 사고를 조사하여 기록하고, 평가 확인서를 작성한다.

2.2.1.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사고



2.2.2. 근로계약 외의 기타 계약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2.2.3. 개인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사고 당한 경우

2.3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특성, 발생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의 2.2에 명기된 위원회의 회원 구성에 변경이 가능하다.

2.4 출장, 계약, 동원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 법원 결판 집행 기관 및 경찰 기관의 근로자, 군인, 수감자, 실습을 하고 있는 대학생이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한 경우 그것을 사고 당시의 사업주와 연관하여 기록하며 본 규정의 2.1에 명기된 위원회 구성에 해당 기관의 대표인을 포함시킨다.

2.5 본 규정의 2.1, 2.2, 2.10-에 명기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가 피해자의 사회 보험료의 지급/미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본 규정의 제1 첨부서로确定的한 "산재 기록서(이하 "기록서"라고 함)에 따라 산재, 급성 중독을 조사하여 기록한다.

2.6 산재, 급성 중독을 확인한 기록서에 위원회장, 위원들이 사인하여 확인한다. 확인서에 산재, 급성 중독의 발생 이유, 원인을 정하여,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하신 경우 증인)의 설명서를 첨부한다.

2.7 산재 기록서를 노동 국가 감독원, 급성 중독 기록서 산업보건 국가 감독원이 각각 검토해서 확인한다. 산재, 급성 중독 때문에 사람이 사망한 경우 검토 감독원이 별도로 조사하여 평가한다.

2.8 본 규정의 1.7-에 명기된 사고를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서의 오른쪽 밑 부분에 "피해자의 잘못 때문"라고 기재하여, 사업주가 사인하여 확인한다.

2.9 산재, 급성 중독을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서, 결과서를 4부씩 작성하여, 피해자 및 그의 가족에게, 아이막, 구역의 사회보험 기관, 해당 지방의 노동 및 산업보건 감독원에 업무 3일안에 각각 1부를 송부한다. 사업주 및 아이막, 수도, 솜, 구청의 위원회의 확인서, 결과서의 1부를 문서보관용으로 보관한다.

2.10 비상, 독해 및 손해가 많은 산재,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시에 정부에서 위원회를 임명하여 조사하고 기록한다.

3. 위원회의 권리, 의무

3.1.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3.1.1. 제조 과정, 작업장에 들어가서 산재, 급성 중독의 현황을 직접 확인

3.1.2. 산재의 형태에 따라 전문가, 분석자를 포함하여 사고 기록 업무에 자문, 도움을 받고, 사고에 대한 기술적인 평가, 실험실 검사, 실험을 하고 결과서 발행을 의뢰하고, 리스크 평가서 작성 의뢰

3.1.3. 피해자 및 산재, 급성 중독이 발생 당시 있었던 증인, 전문가, 상사에서 정보, 인터뷰 받고, 관련 서류 조사

3.1.4. 산재, 급성 중독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기계, 차량 제공

3.2.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3.2.1. 산재, 급성 중독의 조사, 기록 과정에서 민원, 의견, 요청을 받아들여 업무 3일 안에 조사하여 해결한다.

3.2.2. 산재, 급성 중독의 원인을 없앨 조치를 취할 계획을 작성하여 실행에 대해 검토한다.

3.2.3. 산재, 급성 중독의 원인을 조사한 확인서, 평가 결과를 전체 근로자들에게 공지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에게 요구사항, 조치사항에 대한 공문서를 전달한다.

4. 산재, 급성 중독의 조사, 기록시 첨부할 문서

4.1. 산재, 급성 중독의 조사 과정에 다음과 같은 문서들을 첨부한다,



- 4.1.1. 각 피해자 별로 작성된 산재, 급성 중독의 확인서
- 4.1.2. 피해자에서 받은 진술, 확인 인터뷰 기록, 피해자가 사망시 증인의 진술서, 그의 인터뷰 기록서
- 4.1.3.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작업장, 장비 기계의 조명, 도면, 장면 영상
- 4.1.4. 산재, 급성 중독 사고와 관련된 문제로 관련 사람으로부터 받은 정보, 인터뷰
- 4.1.5.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등급 (강, 약), 원인에 대한 병원 및 전문 분석자의 평가서, 실험실 분석표, 실험결과서
- 4.1.6. 산재, 급성 중독 사고를 당한 피해자한테 이전에 준 안전노동에 대한 지시에 대한 기록서의 사본, 노동안전에 교육을 받은 것을 증명할 문서
- 4.1.7. 피해자한테 작업복, 보호구를 수여한 것에 대한 문서의 사본
- 4.1.8. 노동의 안전성, 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 및 피해자의 안전하게 근로할 권리, 의무를 확정한 규정, 지시, 명령서, 법률의 관련 조항의 사본
- 4.1.9. 산재, 급성 중독에 대해 급히 통보할 통보서
- 4.1.10. 노동 및 산업보건 검토 국가 감독원의 평가서 (평가서가 나온 경우)
- 4.1.11. 부검에 대한 해당 병원의 결과서
- 4.1.12. 필요한 기타 서류

5. 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통보, 보고서 발행

- 5.1. 산재, 급성 중독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아니면 본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사업주에 즉시 통보한다.

- 5.2. 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통보를 받자마자 사업주, 위원회가 피해자에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중대한 사고나 사람이 사망한 산재, 급성 중독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지방의 전문감독원 및 경찰국에 본 규정의 제 2첨부서로 작성한 “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급히 통보서”와 전화로 통보한다.
- 5.3. 사업주는 위원회가 와서 조사, 분석할 때까지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을 보존한다.
- 5.4.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을 보존하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두는 것은 다른 직원들의 건강에 해롭고, 국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상태면 사업주가 본 작업장의 해당 당시의 장면을 녹음, 사진, 그림으로 증명하여 한다.
- 5.5. 사업주 및 위원회가 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정보를 기록서와 같이 해당 지방의 전문 감독 기관에 제출한다.
- 5.6. 산재, 급성 중독에 대한 사업주, 위원회에서 보낸 정보를 노동 및 산업보건 감독원이 하 반기, 연단위로 해서 본 규정의 제 3, 4 첨부서로 확인한 양식에 따라 종합하여, 노동 검토를 담당할 국가 기관에 해당 년의 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안에 제출한다.
- 5.7. 노동 검토 담당 국가 기관은 종합한 보고서를 노동 문제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 기관 및 국가 통계청에 각각 제출한다.

6. 산재, 급성 중독 사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

- 6.1. 산재, 급성 중독 사고에 대한 기록서를 사업주, 근로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불만사항을 노동 전문검토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 및 법원에 고소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해결 받는다.
- 6.2. 산재 사고가 발생한 이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산재 기록서를 다시 확정하지 않는다.
- 6.3. 노동 및 산업보건 감독원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산재 기록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평가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다.



[별첨 1]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조사, 기록 규정의 제 1 첨부서

확정 _____

노동 /노동 보건/ 감독원

(도장)

산재 기록서

20__년__월__일

1. 사업체 기관의 상호 _____

작업장 주소/아이막, 수도, 읍, 구역, 바그, 허러, / _____

2. 사업 종류 _____

3.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피해자의 성명 _____

생년월일 : _____년 _____월 _____일, 나이 _____ 성별 _____

주민등록증번호 _____ 사회보험노트 _____ 직위 _____

학력 _____ 전공 _____

입사날짜 _____년 _____월 _____일, 명령서 번호 _____

총 근로기간 _____ 본 기관에서 일한 기간 _____

사회보험료 지급하고 일한 기간 _____



4. 본 기관의 관리부에서 안전 노동에 대한 교육 , 지시 받은 상황

5. 노동 안전성, 보건 교육을 받은 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6. 건강 진단을 받은 최근 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7. 집주소 : _____

8. 산재, 급성 중독사고가 발생한 기간 : _____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9.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일어난 작업장, 부분의 명칭

10. 산재, 급성 중독의 상태 /강, 중, 약, 사망/ _____

11. 산재, 급성 중독의 상태 /밑줄/ 뼈가 부러졌음, 관절 부러짐, 인대 늘어나거나 끊어진, 지졌음, 외부, 내부 부상, 생물학, 화학 물질의 부작용

12.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하게 된 이유, 원인



13. 산재, 급성 중독사고 때문에 근로자의 건강에 미친 손해 _____

14. 위원회의 평가서: 산재,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데 직접 영향을 미친 원인, 이유, 활동에 대해 확실하게 기록한다.

15. 위원회의 결정서:

기록서를 작성한 위원회의

위원회장 _____ / _____ /

회원들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_____ /



[별첨 2]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조사, 기록 규정의 제 2 첨부서

산재, 급성 중독의 사고에 대한 급히 통보할 통보서

본 정보를 _____

_____ 등에게 통보했음.

설명서: 통보를 서면으로, 전화로 줄 수 있다. 통보를 전화로 한 경우 어디서, 누구에게 통보한 것에 대해 본 첨부서에 기재하고 산재, 급성 중독 사고 기록서에 첨부한다.

통보한 사람의 성명, 직위

_____ / _____ /

사인 _____ 성명 _____



분야	행번호	에너지 분야	광산 분야	농축업 분야	건설 분야	식업 분야	교통, 운송, 통신 분야	무역 서비스 업 분 야	교육 분야	보건 분야	기타	총합계
근로자의	01											
여기서 여성 근로자	02											
사고 횟수	03											
여기서: 집단 사고 횟수	04											
피해자	05											
여기서 ; 여자	06											
사망자수	07											
장애인이 된 사람	08											
노동력을 임시 잃은 인원수	09											
전문	10											
사고 형식												
사망자 유무	11											
중상	12											
경상	13											
사고 원인												
장비, 기계의 결함, 제조 과정 위반	14											
안전기준 위반	15											
차량 때문	16											
크레인, 운반 기계	17											
전기	18											
화상, 열기	19											
전도(넘어짐), 붕괴(무너짐)	20											
미끄러움												



안전 교육 불충분	21											
작업복, 보호구 불충분	22											
특별 능력이 필요한 일자리에서 전문이 아닌 사람한테 맡겨서	23											
화학 및 생물학 유해 물질	24											
안전기준 미 준수	25											
기타	26											
나이												
18초과	27											
18-35세까지	28											
35세 이상	29											
근로 기간												
5 년까지	30											
5-15 년 사이	31											
15년 이상	32											
사업체 기관의 형태												
국가 및 국가 지분이 있는	33											
사기업	34											
국가 조달												
외국인 투자 및 합작 회사												



산재, 급성 중독 사고의 조사, 기록 규정의 제 3 첨부서

.. /아이막, 수도, 구역 명칭/

산재 사고의 ... 년의 ... 호의 상반기/ 하반기/ 보고서

/ /

행 번호 1.2-에 따라 작성될 근로자의 1년의 평균수를 지방 통계국에서 받는다. 집단 사고란 것에 2명 이상의 피해자가 포함된다.

행 번호 07, 08, 09-에 따라 합계, 행 번호 11, 12, 13-에 따라 합계, 행 번호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에 따라 합계, 27, 28, 29-에 따라 합계, 행 번호 30, 31, 32-에 따라 합계, 행 번호 33, 34, 35, 36-에 따라 합계가 각각 동일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

국가 노동 감독원 _____ / _____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별지]

2009년 1월14일

울란바아타르시

14호

규정 확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의 21.1.8항에 명시된 바에 의해 몽골 정부 명령

1. “산업재해, 급성중독 사고의 조사 및 기록 규정”을 상기 첨부 양식으로 확정
2. 본 명령이 나오는 것과 관련하여 “규정 확정”이란 2000년 7월 5일 날짜로 정부에서 발행한 “규정 확정”란 107호의 명령서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

몽골 정부 총리 S. Bayar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 T, Gandi



첨부 4

몽골국법 2003년 01월 03일 (제정) 울란바야타르 시 정부 감독 및 감사에 대한 법

제1장 총 칙

제1조 법의 목적

- 1.1. 본 법의 목적은 정부의 감독감사 제도, 정부 행정의 감독감사 법적 기본을 확인하고, 정부 감독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를 조정한다.

제2조. 정부 감독감사에 대한 법령

- 2.1. 몽골 정부의 감독 감사에 대한 법령은 본 법 및 기타 법규에 적용된다.

제3조. 정부의 감독감사 제도, 범위

- 3.1. 정부의 감독감사 국회, 대통령, 국가 회계 감시청 및 정부 행정기구의 감사 조사(이하 "전문감독"이라고 함), 헌법 재판소, 법원, 검사국의 감시, 지방 자체국이 본 법에 따라 집행할 감사에서 적용된다.
- 3.2. 국회, 대통령의, 감독감사 헌법 재판소, 법원, 검사국의 감시 및 국가 회계 감시청의 업무와 연관된 관계를 각각의 법령으로 조정한다.
- 3.3. 정부 내각, 각부, 공사, 아이막, 수도, 섬, 구역, 바그, 동의 행정국의 국장은 감독감사 법령으로 특별 권한을 부여된 전문감독 및 지방 자치단에서 본 법에 따라 집행할 검사 및 조사와 관한 관계를 본 법으로 조정한다.

제3¹조. 법의 용어 확인

3¹.1. 본 법에 이용된 용어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3¹.1.1. "감독감사"란 국민, 사업장 및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활동, 그리고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 상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법령 조항에 명시된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한 감독감사 조치를 말한다.

3¹.1.2. "감독감사 방법, 형식"이란 본 감사에 포함될 문서를 검토하고, 감사 받는 자의 사업 활동구역, 작업장, 건물, 사무실, 장비 기계, 기타 대상물, 차량, 물품에 대한 검사, 상품 및 해당 생산, 서비스, 판매업을 하고 있는 작업지에서 샘플 검사, 실험을 하고 손해 및 위반 사항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목적으로의 분석 등, 감독 감사를 할 권한이 있는 기관의 직원,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독 및 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석자, 분석 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3¹.1.3. "감독 및 감사의 기록"이란 실행한 감독 감사를 해당 규정에 따라 정보통합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정부의 감독 및 감사의 원칙

4.1. 정부 감독 및 감사 (이하 "감독 및 감사"라고 함)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4.1.1. 사람의 생명, 건강, 사회적 및 환경적인 안전성은 기타 어느 관심, 목적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4.1.2. 감독 및 감사를 법에 명시된 바에 의해 실시하며 본 감독 및 감사는 독립하고, 성실한 감독 및 감사를 실시할 권한 있는 기관의 활동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4.1.3. 감독 및 감사와 관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조달할 것이며 법으로 정한 바 이외의 경우 감독 및 감사 업무와 관련된 어떤 지출은 감사를 받는 자에게 요청하지 않는다.

- 4.1.4. 감사를 받는 자에게 공정하게 대하고, 그의 법적인 권익, 명예를 존경한다.
- 4.1.5. 감독 및 감사를 계획할 때 해당 대상 목록에 근거한다.
- 4.1.6. 감독 및 감사를 법 및 공동으로 준수하기로 등록된 법규에 의해 실시하며 다만 법으로 권한을 부여한 감독 및 감사 기관 및 직원이 실시한다.
- 4.1.7. 감독 및 감사를 이중으로 하지 않으며 정부의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실시한 분석 결과, 결과서를 감독 감사를 실시할 권한 있는 기관이 양측을 서로 인정한다.

제 5조. 감독 감사를 실시할 총칙, 규정

- 5.1. 감독 감사를 실시할 권한 있는 기관(이하 “감독 감사 기관”이라고 함)은 이 법에 명시된 근거, 규정에 따라 감독 감사를 할 것이며 감시 및 조사는 계획, 비계획으로 분리한다.
- 5.2. 계획된, 비계획 감독 감사를 권한 있는 직원을 확정된 지령에 따라 실시하며 아래의 내용들이 있어야 한다.
 - 5.2.1. 년 월 일, 명령의 번호
 - 5.2.2. 감독 감사의 목적, 원칙
 - 5.2.3. 감사의 종류, 방법, 형식
 - 5.2.4. 감사 및 조사의 범위, 감독 감사에 응할 사업장 기관, 주민, 대상의 명칭
 - 5.2.5. 감독 감사팀의 구성, 팀장
 - 5.2.6. 감독 감사의 시작 및 종료 일자
 - 5.2.7. 이전 감독 감사에 대한 정보

- 5.3. 사람의 생명, 건강,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위험 및 거액의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감독 감사를 전문감독 및 비상사태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행정 기관의 권한 있는 직원의 결정으로 본 법의 5.2에 명시된 지령없이 실시할 수 있다.
- 5.4. 감독 감사를 관련 문제에 대해 선 평가를 하고 그것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 5.5. 감독 감사팀 구성에 정부 및 비정부 전문 기타 기관, 분석자, 분석 기관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 5.6. 감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권한 있는 직원이 조사 받을 자에게 조사의 목적, 조사팀의 인원들을 소개하고 지령, 조사장의 1부를 부여할 것이며 국가 감독원의 증명서를 보여 준다
- 5.7. 감독 및 감사는 지령, 조사장에 명기된 문제 범위내에서 수행한다.
- 5.8. 필요하면 국가 감독원이 감독 감사의 업무 실시상황 및 발견된 위반사항을 증빙한다. 사진,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조사 받는 자, 그의 공식 대표인, 권한 있는 직원이 감독 감사의 진행 과정, 국가 감독원의 활동, 발견된 위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
- 5.9. 감독 감사 과정에서 국가 감독원이 조사 기록을 2부씩 작성하며 1부를 조사를 받는 자에게 전달한다. 조사기록서에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기록한다.
 - 5.9.1. 조사 과정 및 조사로 발견된 상황
 - 5.9.2. 국가 감독원의 의견, 평가
 - 5.9.3. 조사 받는 자의 의견, 희망 사항
- 5.10. 감독 감사 받는 자가 조사 기록서를 읽어보고 사인하여 확정해야 하며 만약 사인하는 것을 거절하면 이에 대해서 조사 기록서에 기록한다.



- 5.11. 국가 감독원이 조사 기록서 및 조사 결과에 대해서 수석 감독원에게 본 조사가 끝난 후 업무 5일안에 보고한다.
- 5.12. 조사 결과에 발견된 위반 사항들을 중단할 목적으로 국가 감독원이 조사 받는 자의 사업 활동을 임시 중단시키고, 자본을 압수한 경우 수석 감독원이 업무 5일안에 국가 감독원의 취한 조치를 검토하고 그것의 변경 여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며 조사 받는 자에게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한다. 환경 감사에 본 조항은 무관하다.
- 5.13. 감독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만족한 경우 해당 사업장 기관 및 주민의 의뢰서 및 확인조사의 결과서에 근거하여 부과한 벌금액 감소, 아니면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본 결정을 수석 감독원이 낸다.
- 5.14. 실시한 감독 감사에 대한 정보를 그때마다 감독 감사 종합기록부에 기록한다.
- 5.15. 감독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 직원, 감독 감사 업무에 참여한 기타 참여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받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 5.16. 감독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및 기타 문서들을 해당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감독 감사를 실시한 직원이 서명한다.
- 5.17. 법령에 다르게 명시하지 않았으면 감독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 조사에 대한 결과를 내린 이후 업무 10일 이내에 국민에게 공개한다.
- 5.18. 국가 감독원이 감독 감사를 실시할 때 법에 명시된 규정 및 국가 감독원의 윤리를 위반한 경우 조사 받는 자가 감독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권한 있는 직원 및 전문 감독청의 윤리 위원회에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¹조. 계획된 감독 감사

- 5¹.1. 전문 감독청 및 지방 감독국에서 다음해에 실시할 감독 감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고려해 전문감독원이 전년 12월 1일안에 확정하고 대중에게 공고한다.

- 5^{1.2}. 감독 감사 기관이 계획된 감독 감사에 대해 조사를 받는 자에게 5일 이전에 우편, 전화,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통보해야 하며 통보서에 감독 감사를 할 기관의 이름, 조사 기간을 기재한다.
- 5^{1.3}. 법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실시할 계획 감독 감사의 기간은 업무 15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기에 조사 결과 평가 및 재무 조사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5^{1.4}. 계획 감독 감사를 할 때 해당 법인의 권한 있는 직원을 동행 참여시켜야 하며 해당 직원이 동행하지 않는 것은 본 조사를 지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제5²조. 비계획 감독 감사

- 5^{2.1}. 비계획 감독 감사를 주민, 사업장 기관의 의뢰서, 불망 확인서, 정보,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 그리고 사고, 전염병, 중독 사고 등의 사람의 생명, 건강,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법령에 명시된 기타 조항에 의해 한다.
- 5^{2.2}. 본 법의 52.1-항에 명시된 주민, 사업장 기관이 의뢰서, 불망 확인서, 정보를 줄 때 관련 증명서 및 증거물이랑 같이 제출해야 하며 본 의뢰서, 불망 사항 확인서, 정보를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감독 감사 기관이 조사를 업무 5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
- 5^{2.3}. 비계획 감독 감사를 그것을 실시하게 된 근거, 지령에 명시된 문제의 범위 내에서 만 한다.
- 5^{2.4}. 법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았으면 해당 대상에서 실시할 비계획 감독 감사의 기간은 업무 1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여기에 조사 결과를 평가할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
- 5^{2.5}. 본 법의 52.1-에 명시된 바 이외의 근거에 의해 비계획 감독 감사를 실시하기를 금지한다.

제5³조. 재확인 조사

- 5^{3.1}. 확인 조사를 그전에 실시한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해소에 대해서 감독 감사 기관에서 지시한 공식 요구사항들의 실행을 검토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5³.2. 확인 조사를 그전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 그의 원인, 상황을 해소하기로 요구한 사항들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5³.3. 확인 조사를 할 때 조사 받는 자에게 업무 2일 이전에 미리 통보한다.

제5⁴조. 감독 감사 대상의 리스크의 종류

5⁴.1. 사람의 생명, 건강, 환경, 사회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손해, 영향을 고려해 감독 감사 대상의 리스크를 소, 중, 대량-이라고 분리할 수 있다.

5⁴.2. 본 법의 54.1-조항에 명시한 리스크 분리에 포함시킬 요구사항, 기준을 정부에서 확정한다.

5⁴.3. 본 법의 54.2-조항에 명시된 요구 사항, 기준을 근거하여 리스크 종류에 포함될 대상의 목록, 다음 조사 기간을 전문 감독 문제를 담당하는 정부 장관이 검투 분야별로 확정한다.

제5⁵조. 성분 검사용 샘플

5⁵.1. 감독 감사 과정에서 상품에서 샘플 검사를 /"이하 샘플"-이라고 함/ 받게 되면 국가 감독원이 따로 기록서를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5⁵.1.1. 샘플 검사 받을 것에 대한 기록서 년, 월, 일, 주소

5⁵.1.2. 조사 받는 자의 이름, 주소

5⁵.1.3. 샘플 검사를 받을 때 같이 있었던 조사 받는 자의 대표인의 이름, 직위

5⁵.1.4. 샘플 검사를 받은 국가 감독원의 성명, 직위

5⁵.1.5. 샘플 검사를 받게 된 근원, 사연

5⁵.1.6. 수입한 국가 및 제조업체의 이름

- 5⁵.1.7. 샘플 검사를 받은 기간, 상품명, 종류, 포장, 제조번호, 제조 및 보관 기간, 총 수입한 수량 및 샘플 수량, 샘플의 가격.
- 5⁵.2. 본 법의 55.1-에 명시된 기록서를 3부 작성해야 하며 조사 받는 자 및 공인 실험실에 1부씩 주고, 나머지 1부를 조사 기록부에 첨부한다.
- 5⁵.3. 국가 감독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샘플 받고 본 샘플의 안전성, 위생성, 보관 및 운송, 보관 온도 규정을 잘 지킨다. 샘플 검사, 그의 보관, 운송과 관련 규정을 전문 감독 담당 정부 위원이 확정한다.
- 5⁵.4. 감사 받는 자가 샘플 검사 시 같이 동행하고 본인 의견, 불만 사항을 제의할 수 있다.
- 5⁵.5. 상품 샘플 검사 때문에 조사 받는 자의 생산절차 정상 과정이 실패될 경우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다시 돌려준다.
- 5⁵.6. 감독 감사 기관이 성분 검사용 샘플의 대금을 지불할 것이며 해당 상품의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을 재무 담당 정보 위원이 확정한다. 상품 가격을 확정할 때 해당 상품의 최근 6개월의 도매 /시장의/ 가격을 고려한다.
- 5⁵.7. 성분 분석 검사 결과로 샘플이 법령 및 규격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해당 상품에 대해서 다시 성분 분석 검사를 하고, 식품을 통해서 전염될 질병이 발생한 경우 검사비를 조사 받는 자에게 받는다.
- 5⁵.8. 이것은 국경 전문 검사 조사와 무관하다.

제2장 감독 감사에 대한 정부 행정 기관의 전권

제6조. 정부의 전권

- 6.1. 법령의 실행을 위해 취한 조치, 그의 결과를 국회의에 매년 보고한다.



- 6.2. 정부 내각, 각부, 공사, 및 전문 감독기관, 지방 자체기관에서 법령, 대통령의 명령, 정부 내각에서 나온 결정의 집행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업무의 분석을 하고, 영향 및 결과를 추진할 조치를 취한다.
- 6.3. 행정 감사의 유익한 제도를 마련할 조치를 취하고, 전문 감독 기관들의 협력목적을 동일시켜 조정한다.
- 6.4. 사업장 기관의 업무에 내부 감독 감사를 실시할 공동 규정을 정부에서 확정한다.
- 6.5. 법령에 명시된 기타 전권을 집행한다.

제7조. 내각부, 공사 및 정부에서 설립하는 행정기관의 전권

- 7.1. 법령, 대통령 발령, 정부의 결정을 실행할 업무를 해당 분야 상부 기관이, 소속 기관에 대해, 사업장 기관이 자기 사업 활동 범위로 조정하고, 진행 상황, 결과를 정한 규정에 따라 정부에 보고한다.
- 7.2. 정부에서 확정한 일반 규정에 의해 소속 기관, 사업장 기관이 사내에서 내부 감독 감사를 조정할 규정을 확정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 7.3. 법령, 대통령 발령, 정부의 결정의 수행에 대해 소속 기관, 국가자산 및 국가 지분이 있는 법인에 대해 감독 감사하고 필요하면 그들의 상사의 설명 및 정보를 듣는다.
- 7.4. 소속 기관, 사업장 기관의 국가 재산 사용, 보관, 보호 상태, 회계 기록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8조. 아이막(도), 수도, 숨(동네), 구역, 바그(동)의 관청장의 전권

- 8.1. 모든 단계의 청장은 다음 과 같은 전권을 누린다.
 - 8.1.1. 법령, 대통령 명령, 정부, 그의 부처 및 인민대표자회의 결정의 수행에 대해 해당 지방에서 활동을 하는 기관, 회사, 이들의 소속 및 유산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감독 감사한다.

8.1.2. 법령, 대통령, 정부, 그의 소속 기관 및 교민대표회의 결정의 수행에 대해 해당 지방에서 통보, 공고, 수행할 업무를 조정하고, 결과, 수행에 대한 결과를 정부에서 확정한 규정에 따라 상부 기관의 청장, 정부에 보고한다.

8.2. 아이막, 수도 도지사 특별 전권

8.2.1. 정부에서 정한 공동 규칙을 근거로 하여 본인 및 산하 도지사 비서실, 소속 기관, 사업장 내부 감독감사 진행 규칙 확정 및 준수

8.2.2. 법령, 대통령 발령, 정부 결정 이행 조사 업무를 관할 지역 내에서 진행 및 종합하여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대통령 과 정부에게 제시한다.

8.2.3. 솜, 구역, 소속기관, 사업장 정부자산 사용 및 보관, 보호, 등록 및 재정 운영에 대한 서류를 심사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8.3. 솜, 구역 구청장 특별 권한

8.3.1. 법률 및 법칙, 대통령 발령, 정부, 정부 기관 및 국민 대표의회 결정에 대한 운영 활동, 과정, 결과에 대하여 관할 지역 기관 및 사업장 운영자들의 의견을 듣고, 발표를 상의하여 법률 준수에 대한 의무를 준수시키도록 한다.

제9조. 전문감독원 전권

9.1. 전문감독원은 종합적인 관리 제도를 갖추어야 하며 국가 예산에서 조달된다.

9.2. 전문감독원은 중앙 기관 및 아이막, 수도, 전문 감사실, 국경 전문 감사실, 솜 전문 감사실 및 국가 감사원으로부터 구성된다.

9.3. 전문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9.3.1. 법률이 정한 대로 공동으로 준수하는 법령 및 기타 규칙에 대한 수행에 감독한다.



- 9.3.2. 정부 상급기관은 법령을 근거하여 공동으로 준수하는 규칙 이행 상황을 조사하며 관할 법률 법칙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을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하며 1년에 1번씩 정부에 보고하여야한다.
- 9.3.3. 감독 및 감사를 분야별로 진행하는데 있어 관련 규칙, 지시, 양식, 방법, 기술 기준의 리스크에 대한 분류를 고려해 감독 및 감사 기준, 감독 기록서를 확정한다.
- 9.3.4. 지방 전문 감독청의 부서별 기관에 전문직 개선 및 업무운영 관리를 향상시킨다.
- 9.3.5. 전문감독원의 전문 인력을 향상시키려면 관련된 업무를 반복적인 교육 및 근무 조건, 사회보장을 마련해 주도록 하여야 한다.
- 9.3.6. 감독감사 및 등록 등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기록 및 관리를 한다.
- 9.3.7. 법령에 명시된 기타 전권

9.4 전문감독 기관은 이익을 국가에 납입시킬 의무가 없다.

9.5. 본법 9.3.3에 정한 규칙, 지시, 감독감사 업무와 관련 법률 및 법칙, 법적인 기타 양식 내역서들은 관련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충분히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9.6. 전문 감독 기관 명확한 방향 및 의무를 즉, 전문감독원 권리 이외의 권한은 비정부 전문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위 제9조는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변경되었음./

제10조. 전문감독원, 그의 공동 전권

10.1. 전문감독 중앙 기관에는 국가 총 감독원, 지점 국가일급 감독원, 국가 감독원, 지방 기관에는 지역 일급 감독원, 국가 총 감독원, 국가 감독원이 근무한다.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 일 법으로 추가 개정되었음./

10.2. 전문감독 중앙 기관 청장은 정부기관관리, 재정법 45.1조항으로 후보자들 중에서 선발하여 몽골 총리가 직접 임명 및 해명한다.

10.3. 전문감독 중앙 기관 청장은 전문 감독 국가 총 감독원이어야 한다.
총 감독원 권한은 정부에서 지정한다.

10.4. 전문감독 중앙 및 지방 기관에는 지점 총 감독원, 일급 감독원, 감독원이 근무하며 법으로 감독원에게 국가 감독원 권한을 총 감독원이 정한다.

/본 부분을 2010년 06월 10 일 법으로 변경하였음./

10.5. 전문 감독 지방 기관 소장은 아이막, 수도 도지사와 상의하여 전문 감독청장이 임명한다.

10.6. 전문감독 지방 기관 소장은 국가 일급 감독원이어야 한다.

10.7. 전문 감독 지방 기관 감독원은 본 지역 일급 감독원이 임명 및 해명한다.

10.8. 국가 감독원은 정부에서 디자인 확정된, 감독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간부가 제공한 정부 및 개인 번호가 있는 증명, 메달, 공식 요청서, 결론, 양식, 벌금 인쇄물을 사용한다.

10.9. 전문 감독원은 다음 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본 부분에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변경하였음./

10.9.1. 법령, 그걸 근거로 하여 정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관리의 일정한 분야에서 공중으로 준수하기로 한 특별 규칙 이행에 감독한다.

10.9.2. 감독감사 진행 대상으로 방해 없이 통관한다.

10.9.3. 관련 기관 과 상의하여 해당 전문직을 감독 및 감사에 참여시키며, 필요 시 확인 목적으로 실험실 및 확인 검사를 전문 기관에 맡긴다.



/본 조항은 2010년06월 10 일 법으로 무효로 정하였음./

10.9.4. 감독감사에 필요한 정보, 조사, 지시, 정의서, 기타 서류는 관련 기관, 사업장, 직원에게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10.9.5. 물품 샘플, 디자인을 기록하여 감독 해당 상급 기관에서 정한 수량 과 사이즈로 무상으로 인수 및 검사할 수 있다.

/본 조항은 2010년 06월 10 일 법으로 무효로 정하였음./

10.9.6. 기관, 사업장, 국민 불법 수입, 재산을 기록하여 국가 예산으로 인수,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일에 대한 손해 보상은 관련 법으로 해결한다.

/ 본 조항은 2010년06월 10일 법으로 무효로 정하였음./

10.9.7. 생명, 건강, 환경에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준 것이 정식적으로 증명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경우 관련 업무, 생산 및 서비스 운영을 전체 아니면 부분적으로 위반이 제거될 때까지 임시 중단하고, 필요 시 물품 소독, 독 제거 및 청소, 또는, 건축물 및 기계와 중장비 사용 중단, 관련 물품 판매의 금지, 폐쇄하거나 해당 규칙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용도로 이용 허가를 내고 이에 대해 국민에게 통보

~~본 조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또는 법에 다르게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생산 및 서비스 중단 결정,~~

/본 조항이 2010년 06월 10 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10.9.8. 감독 및 감사 진행 시에 발견된 위반을 엄격히 중단하기, 그의 근본적인 사유 제거에 대해 관련 기관 및 사업장, 개인, 직원에게 요구를 하여 일정한 기간으로 의무적인 숙제를 남겨 완벽히 수행하도록 한다.

/본 부분이 2010년06월 10일 법으로 추가 개정되었음./

10.9.9. 심각한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거나 생명 및 건강에 피해를 본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견된 위반은 범죄성을 갖고 있을 경우 감사 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양도

/본 조항은 2010년06월 10 일 법으로 무효로 지정되었음./

10.9.10. 국가 감독원은 법률 및 법칙을 엄격히 지키기, 간접적인 영향에 들어가지 않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정부, 기관, 사업장, 직책이 있는 자의 법적인 이율, 명성을 존경하기, 본인 및 부인, 남편, 가정 기타 인원, 친척에 관련 문제의 감독감사를 거절하기, 감독 감사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의무가 있다.

10.9.11. 국가 감독원은 수행한 감독감사, 발급한 결론, 작성한 소개서, 요청서, 수량, 서류 원본, 증빙 자료 진실을 완벽히 보증한다.

10.9.12. 법으로 정한 대로 민법 벌금형 부과하기

10.9.13. 법률 및 법칙으로 정한 기타 권한

10.10. 국가 감독원 일정한 권한을 민법, 해당 감독감사 법으로 정한다.

10.11. 아이막, 수도 전문감독소 소장은 정부 감독 감사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부원들 중에서 정부법 17.1 조항으로 선발하여 임명된다.

/본 부분은 2006년12월 22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10.12. 국가 총 감독원, 국가 일급 감독원은 본법 10.9 조항에 정한 권한 이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10.12.1.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전문직 자들이 감독감사 진행에 참여하도록 하여, 필요 시 확인 목적으로 실험실 및 검사를 전문 기관에 양도



- 10.12.2. 사업장 기관, 개인 불법 수입 및 재산을 기록하여 국가 예산에 압수, 타인의 손해 배상 문제를 관련 법률 법칙대로 해결;
- 10.12.3. 본 법 10.9.7조항으로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다르게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감독원의 결정을 재판에서 보증하여 강제 이행 또는 해당 생산, 서비스를 중단시킬 의견 및 결론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 해결
- 10.12.4. 심각한 사고나 위험이 발생했거나 생명 및 건강이 피해를 본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또는 발견된 위반은 범죄성을 갖고 있을 경우 감사 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양도
- 10.12.5. 계획 및 비 계획 감독 감사 규정을 확정
- 10.12.6. 국가 감독원 활동 및 감독 감사와 관련 제출한 반대 의견을 조사하여 해결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 10.13. 본 법 10.12.2, 10.12.3 조항에 명시된 권한은, 국가 일급 감독원이 없는 솜에서 본 솜 전문 감독원이 시행한다.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제11조. 국가 감독원 전권 시행에 대한 보장

- 11.1. 국가 감독원이 정부법으로 정한 정부원 근무 조건, 보장, 추가 보장, 지급되는 임금, 보상료, 지원금, 상금, 연금 이외에 아래와 같은 보장이 제공된다.
 - 11.1.1. 감독 감사 업무 시행 도중 도시 내 대중 교통(택시 외)을 이용 시 개인 부담 비용을 정해진 규칙대로 본 기관에서 지급
 - 11.1.2. 감독 감사 업무 시행 도중 근무 능력을 임시 상실했을 경우 노동력 임시 상실 지원금, 직책 월급 차액을 임시 기간까지, 장애 발생 경우 장애인 연금 및 직

책 월급 차액을 장애인 연금 받는 기간에 각 각 지급

11.1.3. 감독 감사 업무 시행 중 사망할 경우 직책에 맞는 3년 봉급 및 해당 지원금을 한 번에 피해자 가정에 지급

11.1.4. 자연 환경 및 국경 감독원은 유니폼 및 소속된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작업복 및 장비를 제공받는다. 전문감독원 유니폼 디자인 및 소속된 이름표를 전문 감독 담당 정부 위원이 확정한다.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11.1.5.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모욕, 의심, 협박 등으로 생명 과 건강에 현실적인 위협을 느꼈을 경우 경찰관으로부터 안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11.2. 본 조항 11.1.2, 11.1.3에 명시된 연금, 지원금, 직책 월급 차액, 무상 지원을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여, 본 금액은 위반자 및 피고인이 배상 지불한다.

제3장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 법인의 감독 감사에 대한 전권

제12조. 아이막(도), 수도, 솜(군), 구역 교민대표의회, 그의 단체장 권한

12.1. 아이막, 수도, 솜 구역, 교민대표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보유한다.

12.1.1. 관련 법률 및 법칙, 대통령 발령, 정부, 정부 기관 및 상급기관, 해당 회의 결정에 대한 운영 활동, 과정, 결과에 대하여 도지사는, 관할 지역 기관 및 사업장 관리, 간부들의 의견 및 정보를 듣고, 발표를 상의하여 법률 준수에 대한 의무를 준수시키도록 한다.

12.1.2. 관할 지역 전 기관, 사업장들의 상급 기관 및 해당 회의 결정에 대한 이행을



그들의 소속, 자본 종류, 방식을 고려하지 않고 감독 감사한다.

12.1.3. 관련 법령, 대통령 발령, 정부, 정부 기관, 상급 기관 및 회의 결정 이행을 충족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회의 대표자들의 궁금한 점 또는 그의 답변을 상의하여 필요 시 해당 결론 도출

12.1.4. 관련 법률 및 법칙, 대통령 발령, 정부, 정부 기관은, 도지사가 회의 결정 이행을 관할 지역 내에서 조직하여 감독 감사하는 권한을 시행하는 데 부족하다고 봤을 경우 권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해명 의견을 총리 및 상급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2.1.5. 법령에 명시된 기타 권한

12.2. 본 조항 12.1.1 항에 명시된 기관, 사업장 관리, 간부들의 정보를 듣고, 발표상의 또는 12.1.2 항에 명시된 권한을 교민 대표회의 관리들이 회의 자유 시간에 시행한다.

제13조. 감독 감사에 대한 기관, 사업장 의무

13.1. 기관, 사업장 사업주는 관련 법령, 대통령 발령, 정부, 정부 기관, 해당 회의 및 도지사와 본인 결정을 기관 내의 수행업무를 조직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공중 규칙에 근거해 사내 감독 감사 규율을 작성하여 근무한다.

/본 부분은 2010년 06월 10일 법으로 개정되었음./

13.2. 기관, 사업장 직원 및 직책이 있는 자는 감독감사 수행에 도움을 주어야 하며, 감독 감사 수행 기관 및 수행자가 감독 감사 중에 발견한 위반에 대해 처리하기, 법을 위반한 업무 중지하기 등 관련 조치에 대한 요청을 수행하여 결과를 정한 기간 내에 공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감독 감사 평가에 대한 불만 제시 권한

14.1. 감독 감사를 받은 기관, 사업주, 직원이 감독 감사 중 법령을 위반하거나 감독감사 평

가는 근거가 없다고 봤을 경우 불만을 감독감사수행 기관 관리에게 제출한다.

- 14.2. 불만 의견서를 인수한 감독감사 기관 관리는 인수 후 30일 안에 감독해 해결토록 한다. 만약 불만 의견서를 제출한 기관, 사업주, 직원은 감독감사 기관 평가를 부인했을 경우 법정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사항

제15조. 감독감사 수행 권한이 있는 자의 책임

- 15.1. 감독감사 수행 권한이 있는 자는 법령 위반했을 경우 관련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진다.

제16조. 정부 감독 감사에 관한 법 위반자의 책임

- 16.1. 정부 감독 감사에 관한 법 위반자에게 국가 총 감독원, 지점 총 감독원, 국가 일급 감독원 및 감독원이 아래와 같이 민법 벌금을 부과한다.

16.1.1. 감독감사를 피한 자는 최저 노동급여의 2-3배 늘린 금액과 해당하는 투그릭, 직책이 있는 자는 최저 노동급여의 4-5배 늘린 금액과 해당하는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한다.

16.1.2. 감독감사 기관, 감독원 공식 요청, 요구, 결론, 평가서를 거절하거나 정한 기간에 시행하지 않는, 요청에 대한 이행을 통보하지 않은 자는 최저 노동급여와 해당하는 토크이거나 아니면 거기의 2-3배와 해당하는 토크으로, 직책이 있는 자는 최저 노동급여의 2-4배 늘린 금액과 해당하는 토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16.1.3. 내부 감독 감사 규율을 정하지 않거나 감독 감사 수행에 지장을 준, 결론 및 결정에 영향을 주기를 시도한 자는 최저 노동급여의 3-5배 늘린 금액과 해당하는 토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다.



- 16.1.4. 감독감사와 관련된 서류 인수인계를 근거 없이 거절하거나 임시 기간으로 인수인계를 피한, 찢거나 수정한, 없앤, 가짜 서류 제출한 자는 최저 노동급여와 해당 특력으로, 아니면 2-3배 늘린 금액과 해당하는 특력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의 16.1 항을 2010년06월 10일 법으로 변경하였음./

- 16.2. 피고인에게 본 조 16.1항에 명시된 민법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법으로 정한 책임을 벗어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16.3. 본 법은 2003년 01월 03일부터 준수하도록 한다.

몽골국 국회의장 _____ S. TUMUR-OCHYR.

해외 진출기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 발행인 : 박 두 용
- 발행일 : 2020년 12월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 연락처 : 052) 703-0741~746

2020-국제협력센터-939

* 당 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비매품)